제2부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김광수	관리번호 : CJA0001582	쪽번호 : 956~958

대정 8년 형(刑) 제101호

판 결

강원도 울진군 북면(北面) 부구리(富邱里) 24번지, 농업, 김광수 42세

위에 대한 직무 집행 방해,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검사 사무취급[1] 조선총독부 경시(警視) 하세가와(長谷川豊治)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광수(金光壽)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대정 8년 4월 13일은 강원도 울진군 부구리 시장이 열리는 당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불온한 동작을 할 기미가 있어 경찰 관헌에서 경계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날 오후 11시 무렵에 수십 명의 무리가 같은 시장 부근의 각 곳에서 대한국독립만세를 연호하며 치안을 방해하였다. 헌병 보조원 박상교(朴庠敎)는 현장에 가서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군중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의 1명인 피고는 반항하며 박(상교) 보조원이 가지고 있던 총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놓지 않았다. 같은 보조원인 주상철(朱尙轍)이 와서 총으로 피고의 어깨를 때렸고, 피고는 오른손으로 주(상철) 보조원의 총을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박(상교) 보조원은 왼손으로 총을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그 자리에 있던 돌을 주워 피고의 왼손 손등을 때려도 놓지 않았기에 경찰 호루라기를 불어 아라이(新井) 상등병에게 알렸다. 아라이(新井)가 달려와 "사격하라"고 명령하자 두 보조원이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여 피고들은 점차 해산하여 도주하였다.

1)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아 검사의 사무를 다룰 권한이 인정된 것.

위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증인 박상교의 신문조서 중에 "답: 군중 중에 4~5명은 도주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해산하지 않았기에 총을 겨누고 해산을 명령하자, 군중들이 몰려왔고 그 중 1명이 자신의 총을 양손으로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주(상철) 보조원이 와서 총으로 그 자의 어깨를 때리자 오른손을 떼고 주(상철) 보조원의 총을 움켜쥐었다. 2명 모두의 총을 잡고 떨어지지 않아서 왼손은 총을 잡고 오른 손으로 돌을 쥐어 그 자의 왼손 손등을 때리며 떨어지라고 말하였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경관 호루라기로 아라이(新井) 상등병에게 알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헌병보조원 주상철의 보고서에도 위 조서의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의 신문조서에 보조원의 총을 잡고 떨어지지 않자 발사하였다는 내용, 왼쪽 손등의 상처는 총을 잡고 있을 때 보조원에게 맞은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건대, 위 치안 방해의 점은『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또 헌병보조원의 해산 명령에 반항하여 총을 잡고 폭행한 점은『형법』제95조 1항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병합죄이므로 같은 제45조 · 제47조 · 제10조에 따라 무거운 같은 제95조 1항의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징역 6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가사하라(笠原良保)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황명석(黃命錫)

박순교 · 이준용 · 허현 · 허기준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511~513

판 결

강원도 춘천군 북산면(北山面) 조교리(照橋里), 농업, 천도교, 박순교 50세

강원도 춘천군 서하면(西下面) 방동리(芳洞里), 농업, 천도교, 이준용 60세

강원도 춘천군 동면(東面) 장학리(獐鶴里), 농업, 허현 33세

강원도 춘천군 동면 장학리, 농업, 허기준 34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순교(順交) · 준용(俊容) · 현(鉉) · 기준(基俊)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들은 지난번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하여 군중이 각 지역에서 독립 시위 운동을 하고 있음을 듣고 그 거사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 3월 28일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내 시장에서 그 장소에 집합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의 해당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바, 위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하여 신 · 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 · 대조하여 구법인『보안법』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정한 바 형량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신재근 · 장도훈 · 안경춘 · 강만형 · 윤태환	관리번호 : CJA0000414	쪽번호 : 569~576

판 결

본적지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橫城面) 영영포리(永永浦里) 441번지, 농업, 천도교도 신재근 64세(12월 17일생)

본적지 주소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상안흥리(上安興里) 240번지, 농업, 천도교도 장도훈 49세(4월 30일생)

본적지 주소 횡성군 정곡면 상안흥리 641번지, 농업, 천도교도 안경춘 20세(11월 26일생)

본적지 주소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223번지, 농업, 천도교도 강만형 28세(1월 15일생)

본적지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邑下里) 68번지 잡화상 예수교도[耶蘇教徒] 윤태환 22세(8월 1일생)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신재근(申在根)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장도훈(張道勳)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안경춘(安敬春)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강만형(姜萬馨)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윤태환(尹泰煥)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신재근 · 장도훈은 모두 천도교 순회 교사로서 일 · 한 병합 당시 이에 대해 불평을 품

고 예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던 자인데,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의 조선 독립선언 이후 조선 내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 시위 행동이 발발함을 알고 바로 이에 찬동하여 피고들의 거주 마을에서도 역시 조선 독립의 기운을 양성하려고 계획하여, 대정 8년 3월 2일 위 주소지인 피고 신재근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 모의한 끝에, 피고 장도훈은 우선 경성으로 가서 태극기 1폭(제 1호 증) 5촌(寸) 크기의 조선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와 독립선언서 40매를 구매하여 이를 가지고, 3월 26일 피고 신재근의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횡성시장 장날을 기하여 일을 거행하기로 하고, 다음 27일에 피고 두 사람은 이를 가지고 횡성시장으로 가서 그 시장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 윤태환에게 위의 태극기(제 1호 증)를 교부하여 이를 흔들게 하고, 시장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 위 조선 종이로 만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부, 선동 · 솔선하여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였고,

피고 안경춘은 천도교 신도로서 예전부터 조선 독립의 희망을 품었던 사람인데,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이 발발함을 알자 이에 찬동하여 같은 날, 같은 시위 운동을 하고자 하여 같은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 신재근 등이 위와 같이 똑같은 운동을 시작하려 하자, 바로 이에 찬동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고,

피고 강만형은 일 · 한 병합에 대하여 일찍이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사람인데, 같은 날 같은 시장에 볼일이 있어 갔더니 위와 같이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이 시작하려 하자, 바로 이에 찬동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고,

피고 윤태환은 위 판시와 같이 피고 신재근으로부터 태극기를 교부 받자 이를 흔들며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따라 부른 것으로 피고들은 모두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서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각 피고의 본 법정에서 각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헌병 상등병 사나에(稻苗彦左衛門)의 대정 8년 3월 27일부 횡성헌병분견소장 앞의 보고서 중에 대정 8년 3월 27일 횡성시장 네거리 부근에서 피고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시위 운동을 하려고 함으로 단속하여 강제 연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압수된 태극기가 있음에 비추어 증거 충분하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신 · 구 두 법의 형을 비교 · 대조하니,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여 정한 바의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 처단한다. 압수 물건은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타(平田泰次郎)

김은봉	관리번호 : CJA0000429	쪽번호 : 862~864

판 결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地正面) 안창리(安昌里) 농업 김은봉(金恩鳳) 24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 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손병희 등의 조선 독립 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를 변혁할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4월 9일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 뒤편 산중에서 수명의 주민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름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판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데 위 범죄 후의 발포에 관계되는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제8조, 제10조에 의해 신 · 구 양법을 대조하니 구법인『보안법』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고 정한 바의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김용순	관리번호 : CJA0000419	쪽번호 : 1232~1235

판 결

주소 및 본적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서변리 317번지, 잡화상, 김용순(金用淳) 21세

위의 자에 대한 업무 방해 협박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증제2호 협박문서는 몰수하고, 기타는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3월 30일에 거주 마을 서변리(西邊里)의 상점을 협박하여 문을 닫게 할 것을 기도하여 같은 날 자택에서 "오는 3월 31일 상점을 닫지 않으면 상점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문서(증제2호) 7매를 만들어 이를 서변리 반희경(潘熙敬) 외 6명의 상점에 투입하여 다음날 31일에 이들의 상점이 문을 닫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가 증제2호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똑같이 7장을 만들었고, 그 중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내일 3월 31일에 문을 닫지 않으면 방화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적이 있고, 위 협박장을 평강읍내의 이규위(李奎瑋) 외 5명의 상점에 30일 밤에 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 날 문을 닫는 가게도 있었고, 이런 일은 각지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단행했다는 내용의 진술,

1. 사법경찰관의 증인 반희경 조서에서,

올해 3월 31일 아침에 자택 문에서 내일 가게를 닫지 않으면 방화하겠다는 의미를 적은 종

이쪽지가 있어서 무서운 나머지 그날 가게를 닫았는데 읍내의 각 상점은 대체로 폐점하는 모양이었다는 내용의 기재,

1. 판시와 같은 취지의 협박 문구의 기재가 있는 증 제2호의 존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형법』제234조 · 제233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품 중 증제2호는 피고의 소유에 관계되고 범죄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고, 다른 것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송일길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259~264

판 결

본적 주소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 읍내리 365번지, 농업, 송일길 2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사와(山澤佐一郎)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 독립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 마을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 읍내리(邑內里)에서도 이에 비추어 많은 사람과 함께 독립 시위 운동을 하기 위해 주민을 선동할 목적으로 대정 8년 3월 28일 자택에서 「광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거주지 읍내리 마을에서도 독립 운동을 하자"는 뜻을 기재한 문서 3통(령(領)제1호~3호)을 만든 후 같은 달 30일 밤에 읍내리 음식점 김(金)씨 녀의 집에서 친구 염양억(廉良億) 외 4명에게 "우리 지방에서도 당연히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가 올해 3월 28일 자택에서 증제2호 · 제1호를 스스로 쓰고, 증제3호를 송덕원(宋德元)에게 의뢰하여 작성했고, 위의 문서는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면 끝내 조선이 독립하니 모두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기재한 것이다.

또 같은 달 20일 밤에 읍내 음식점 김(金)씨녀 집에서 송한영(宋漢永) · 김봉운(金鳳雲) · 송덕원 · 염양억 등에게 지금 조선 각지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묵과함은 유감스러우니 일동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권유했다는 내용의 진술,

1. 검사의 피고 신문조서에,

자신이 증제1호 · 2호 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읍내에 붙여 같은 지방 사람이 알게 하였다. 또 3월 30일 밤에 읍내 김씨녀 집에 가던 도중 우편국 앞 · 헌병분견소 앞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김씨녀 집에서 송한영 외 2~3명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한 것은 대부분 조선인이 독립 운동을 하는데 그것에 찬동하기 때문이었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므로『형법』제6조, 제8조, 제10조에 비추어 신 · 구 양법의 형을 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7호 제1조에 해당하여 가벼운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은 범죄용으로 준비하여 사용하려 한 피고의 소지품이므로『형법』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이인영	관리번호 : CJA0000408	쪽번호 : 430~432

판 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운교리(雲橋里), 농업, 천도교, 이인영 61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다자이(太宰明)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3월 14일 무렵에 김인경(金麟卿)이란 사람으로부터 손병희 등이 작성한 조선 민족은 자유민으로서 일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기재된 독립선언서 2매를 교부받자, 정치에 관한 불온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3월 16일에 피고의 거주지 집에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의 최상달(崔相達)에게 위의 선언서 2매를 교부하여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이형모	관리번호 : CJA0000406	쪽번호 : 266~269

판 결

강원도 이천군 이천면 남좌리 126번지 재적 거주, 농업, 천도교도, 이형모 32세(12월 2일생)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사카이(境長三郎)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형모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10여 년 이전부터 천도교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대정 8년(1919) 3월 1일에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서라는 것을 발표한 결과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의 시위운동이 발발하여 박응규(朴應奎)란 사람이 피고의 거주지 이천면에서도 역시 동일한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여 피고에게 함께 일을 도모할 것을 청하자 즉시 그 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4월 8일에 이천면 추목리로 가서 추목리 주민에게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연합하자고 알리며 순회함으로써 그날 오후 7시 무렵에 이천면 읍내 시장에서 주민 약 300명을 규합하여 서로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시 이들 주민을 몰아 위 시장에서부터 이천헌병분견소 앞으로 몰려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따라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이 있고,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박응규의 아래[配下]로써 주모자가 되어 추목리에 독립 만세 가담자를 모집하는데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는 30가구가 있으므로 절반은 만세를 부르러 가지 않으면 후일 독립했을 때 곤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독립하여 얻을 것이 있다고 믿어 주모자가 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가

있음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 두 법의 형을 비교 · 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한다. 이에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26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이창선 외	관리번호 : CJA0000411	쪽번호 : 793-804

판 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上西面) 봉오리(峰吾里) 57번지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이창선 61세(9월 8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72번지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박용구 36세(5월 9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347번지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김광필 26세(1월 5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24번지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심경지 63세(10월 21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32번지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이재영 51세(11월 5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323번지 거주 재적, 농업, 종교 무, 김정구 64세(1월 2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이응선 36세(12월 13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巴浦里)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정석화 61세

강원도 김화군 근남면(近南面) 잠곡리(蚕谷里) 재적,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多木里) 거주, 서당선생, 종교 무, 이규하 41세(9월 24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多木里)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함여성 26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재적 거주, 농업, 종교 무, 송흥만 33세(1월 28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만리(九萬里) 재적, 상서면 봉오리 거주, 산림간수(山林看守), 종교 무, 박희진 27세(6월 27일생)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재적 거주, 농업, 박치근 46세

위 등에 대한 소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의 입회로, 피고 박치근이 궐석한 채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창선(李昌善)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미결구류일수 140일을 본 형에 넣는[算入]다.

피고 심경지(沈敬之) · 김정구(金貞九) · 정석화(程錫和)를 각 징역 3월에 처하고, 모두 2년

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박용구(朴容九) · 김광필(金光弼) · 이재영(李載榮) · 이응선(李應善) · 이규하(李圭夏) · 함여성(咸汝成) · 박희진(朴喜眞) · 박치근(朴致根)을 각 태 90에 처한다.

피고 송흥만은 무죄.

제3의 공소(公訴) 사실은 무죄.

피고 박치근은 본인이 이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이창선은 대정 8년(1919) 3월 27일에 첨부[肩書]된 같은 피고 거주 마을의 이준극(李俊極) 집에서 마을회의를 개최했을 때, 모인 다수 주민에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선 독립 운동에 찬동하여 이의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써 내일 28일 화천읍 장날을 틈타 다중을 규합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발의하자 피고 박용구 · 김광필 · 심경지 · 이재영 · 김정구 · 이응선 등은 이에 찬동하여 각자 분담해 그 마을(봉오리) 및 상서면 다목리 · 파포리의 주민에게 같은 운동에 참가하라고 선동하였고, 다음 28일 아침에 먼저 위 각 피고 및 피고 정석화 · 이규하 · 함여성 · 박희진 · 박치근 등은 그 외 30여 명의 주민과 함께 위 봉오리와 파포리 사이에 있는 산기슭에 모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상서면 면사무소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 장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참가한 주민이 약 300여 명에 달하여, 그 장소에서 일제히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음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박용구의 본 법정에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

1. 피고 김광필의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3월 27일에 이준극 집에서 봉오리 마을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 후 피고 이창선은 모인 사람에게 조선 각 지역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으므로 자신들 마을에서도 부르자고 발의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 박용구 등 및 자신도 이에 찬성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1. 피고 이응선이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3월 27일에 이준극 집에서 십 수 명을 모아 마을 회의를 개최했을 때 자신도 출석했는데, 회의 종료 후 "근래 조선 각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개시하여 도처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 마을에서도 내일 28일의 화천읍내 장날을 기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자"고 말한 결과 다음 28일에 봉오리와 파포리 사이의 산기슭에서 마을 사람 20~30명 정도가 모여 행진하던 중에 상서면 면사무소 앞에 갔을 무렵에는 약 200~300명이 되었고, 자신은 위 집회 장소 근처에 있던 사람으로 참가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거가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 두 법을 비교 · 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의하면『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구법인『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따라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이창선을 징역 6월에 처하고,『형법』제21조에 따라 미결구류일수 중 14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심경지 · 김정구 · 정석화는 각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25조 · 형법시행법 제54조에 따라 위 3명에게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박용구 · 김광필 · 이재영 · 이응선 · 이규하 · 함여성 · 박희진 · 박치근은 각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모두 정상을 참작하여『조선태형령』제1조 · 제4조에 따라 각기 태 90에 처한다. 피고 송흥만이 대정 8년 3월 28일 화천읍 부근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공소 사실 및 피고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군중과 함께 소요를 일으켰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고 박치근은 합법한 정식 호출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26조에서 제229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9월 1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타(平田泰次郎)

강대려 · 김병건 · 김성민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957~962

판 결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鐵原面) 중리(中里) 242번지 재적 거주, 대서업(代書業), 강대려 30세(9월 24일생)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平康面) 서변리(西邊里) 388번지 재적 거주, 미곡상, 김병건 22세(3월 21일생)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복계리(福溪里) 428번지 재적 거주, 버들고리[柳行李] 제조업, 김성민 22세(8월 5일생)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横田義太郎)가 입회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 문

피고 김병건(金秉健) · 김성민(金聖民)을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구(舊) 한국 기, 포고문 제1호 및 제2호는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피고 강대려(姜大呂)는 무죄.

이 유

피고 김병건 · 김성민은 대정 8년(1919) 10월 중에 조선 전도(全道)에서 같은 달 31일을 기하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의 거사가 있음을 듣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공모한 후 이를 돕기로 계획하여, 같은 달 27일 무렵에 첨부[肩書]된 피고 김병건의 집에서 구(舊) 한국 기 90여 개와 평강경찰서 관내 경찰관 앞으로 "조선 독립의 시위 운동을 하거나 또는 불온문서를 작성 · 반포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들을 체포하지 말라"는 요지의 문서 십수 통을 작성하여, 피고 김성민은 본인이 그 문서를 철원읍내로 가져가 같은 지역에서 이를 우편으로 부쳐 평강경

찰서 관내 조선인 경찰관 김동흡(金東翕) 외 8명에게 보내고, 피고 김병건도 역시 구(舊) 한국 깃발과 강대려로부터 교부를 받은 포고 제1호 및 제2호라는 제목의 "조선인은 조선 독립 운동에 찬동하고 협력하여 조선의 독립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는 요지를 기재한 인쇄물 십수 매를 같은 날 무렵 평강군 평강읍내에서 같은 군 주내면 문산리로 통하는 길거리와 평강읍내에서 같은 면 복계리로 통하는 길거리 및 평강보통학교 운동장 등에 뿌려두어 그 학교 학생, 기타 통행하는 민중으로 하여금 이를 줍도록 함으로써 조선 독립의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여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으로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바 형량 중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기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형편을 참작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를 적용해 각각 태 90에 처하고, 압수 물건 중 구(舊) 한국 기 및 포고문 제1호 · 제2호는 범죄에 제공되었고, 피고들의 소유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여 각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피고 강대려가 대정 8년 10월 27일에 피고 김병건을 교사하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2조에 따라 무죄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1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이도상 · 목준상 · 심헌섭 · 한영수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838~841

판 결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비전리(碑前里), 미곡상, 이도상 30세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합정리(蛤井里), 미곡상, 목준상 29세

경기도 진위군 서남면 비전리, 농업, 심헌섭 32세

경기도 진위군 오성면 양교리(梁橋里), 농업, 한영수 2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최호선(崔浩善)이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도상을 징역 1년, 피고 준상 · 헌섭 · 영수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 도상(道相)은 대정 8년(1919) 3월 5일 무렵에 군중이 경성 및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 운동을 하고 있음을 들어 알고는 그 거사에 찬동하여 경기도 진위군 평택읍 내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군중을 선동할 것을 계획하여 3월 10일 밤에 동생인 이덕상(李德相)에게 집안 일 전부를 맡기고, 다음 날 11일에 평택 읍내로 가서 평택 역 앞에서 장날 때문에 모인 군중에게 스스로 선창하여 여러 번 독립 만세를 절규하며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피고 준상(俊相) · 헌섭(憲燮) · 영수(泳洙)는 그날 그 장소에서 피고 도상의 주창에 따라 여러 차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이 본 법정에서의 해당 각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사법경찰관의 이덕상에게 대한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3월 10일에 자신의 형 이도상은 자신에게 “이 기회에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였는데 내일 평택 장날이므로 그 곳에 가서 동지와 함께 조선 독립을 부르며 만세를 외칠 작정이다. 그러면 바로 체포될 것이므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여 달라”고 하기에 이를 막았으나 그는 “한번 마음먹은 것은 그만 둘 수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위와 같은 하시모토(橋本柳助)에게 대한 신문조서 중 자신은 올해 3월 11일 오후 5시 무렵에 목욕하러 판시 현장을 지나갈 때, 이도상이란 자가 큰 소리로 선창하는 바, 학생과 기타 군중은 모자를 벗어들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각『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바 형기 중에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범위 내에서 각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처분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이형익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139~142

판 결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松都面) 남본정(南本町)[2], 도기상, 이형익 3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하나무라(花村美樹)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3월 1일에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하자 크게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같은 날 경성부(京城府) 대한문 앞에서 많은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 시위 운동을 하고 또 범의(犯意)를 계속하여 같은 달 말일에 성명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 받은 '우리는 이번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우리 조선인은 자유민임을 선언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강권 침략주의에 희생되어 10년이 지난 이때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모름지기 최대의 급선무인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함에 있다'는 불온한 취지를 적은 독립선언서와 '우리 조선 민족들이여 모름지기 각성하고 분기하여 강제 압박과 자유 박탈 상태를 타파하고 영원한 자유 획득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노력을 하자'는 뜻의 불온한 취지를 적은 「경고문」 각 1통을 경기도 개성읍내 북본정(北本町) 김흥옥(金興玉)에게 교부하여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2) 개성시 남안동.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김흥옥(金興玉)에 대한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3월 말일 무렵에 피고가 자기 집에 와서 판시의 선언서 및 경고문을 자기에게 주고 돌아갔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와 아울러 압수에 관계된 판시의 독립선언서 및 경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선언서 및 경고문의 존재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형법』제55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데 위 범행 후의 발포에 관계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형법』제55조에 해당함에 따라 신 · 구 양법의 경중을 대조하니 구법인『보안법』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은 본 건의 범죄에 쓰인 물건으로써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음으로써『형법』제19조에 따라 몰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권성모 · 김인식 · 노수천 · 이광천 · 최광철 · 조영근 · 신순근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869~873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漢芝面) 하왕십리(下往十里) 37번지, 시계수리업, 권성모 38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732번지, 야채행상, 김인식 37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614번지, 농업, 노수천 33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51번지, 농업, 이광천 26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585번지, 미곡상[米商], 최광철 29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789번지, 이발업, 조영근 26세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752번지, 날품팔이[日稼業], 신순근 22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横田義太郎)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7명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천도교주 손병희 및 기타의 무리[徒輩]들이 선언한 조선의 독립을 용이하게 하는 시위 운동으로써 대정 8년(1919) 3월 9일에 사는 마을 하왕십리 마을 사람 300여 명과 함께 왕십리공립보통학교 교정에 모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조선 독립 만세라 부르짖음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

이상의 사실은 본 법정에서 피고 권성모(權聖模) · 이광천(李光天)의 판시 일시 · 장소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각 진술 및 증인 오카(岡正富)의 그 날 하왕십리 교정에서 짐작되는 소요자를 현장에서 잡은 것으로 피고들이 같은 교정에서 소요를 일

으켰던 것은 확실하다는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각『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후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하여 형에 변경이 있으므로『형법』제6조 · 제10조에 의하여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보안법』의 정해진 바 형기 중에 징역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6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임용우 · 최복석 · 이재관 · 윤영규 · 차경창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522~526

판 결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德積面) 진리(鎭里), 사립 덕명(德明)학교 교사, 임용우 25세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月串面) 조강리(祖江里), 잡화상, 최복석 23세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 서포리(西浦里), 서당 교사, 이재관 23세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開谷里), 농업, 윤영규 38세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 서포리, 합일(合一)사숙 교사, 차경창 1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임용우(林容雨)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 최복석(崔復錫)을 징역 1년에, 피고 이재관(李載寬) · 윤영규(尹寧圭) · 차경창(車敬昌)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품 중 국기 1개 및 파(巴)형 검은 종이는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葛山里) · 조강리 외 여러 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대정 8년 3월 29일 정오 무렵에 조선 민족 독립을 위해 만세를 따라 부르기 위해 같은 면 갈산리 부근에 집합하였을 때 피고 최복석은 자신이 만든 태극기(압수품)을 가지고 그 선두에 서고, 피고 박용우 · 윤영규는 그를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 무렵에 같은 군 군하리(郡下里) 공자묘 앞, 같은 마을 공립보통학교 마당 및 면사무소 앞 등에 이르기까지 만세를 높이 불러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임용우는 위의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4월 9일에 같은 피고가 교직원으로 봉직하던 부천군 덕적면 진리의 사립 명덕학교 운동회가 같은 마을 해안에서 행하여 참관자 다수가 집합하는 것을 좋은 기회로 하여 조선 민족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기 위해 모였고, 같

은 날 안내를 받아 참관한 피고 이재관 및 차경창과 모의하여 위 피고들 3명이 주창자가 되어 학생 · 마을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만세를 높이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사실은 각 해당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 제2항의 사실은 각 해당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독립 만세를 높이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이재관 신문조서(100쪽) 중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 기재에 비춰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 임용우의 행위는『보안법』제7조,『형법』제55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피고 최복석 · 이재관 · 윤영규 · 차경창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이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 단 피고 임용우는 같은 조 및『형법』제55조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하여 신 · 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보안법』제7조를 적용하여 그 정한 바 형기 중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 · 처단한다. 압수품 중 국기 및 파(巴)형 검은 종이는 피고 최복석의 소유로 범죄에 쓰인 물건이므로『형법』제19조에 따르고, 그 나머지는『형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가 관여함.

대정 8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라이(新井胖)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주동섭 · 한삼석 · 권만동	관리번호 : CJA0000408	쪽번호 : 406~409

판 결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場基里), 의사, 주동섭 30세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당왕리(堂旺里), 신발제조[靴工], 한삼석 24세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서리(西里), 재봉업(裁縫業), 권만동 30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최호선(崔浩善)이 간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동섭 · 삼석 · 만동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들은 대정 8년(1919) 3월 무렵 조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독립 만세 시위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써 3월 31일 무렵에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각 마을을 줄지어 돌아다니며 독립 시위 운동을 함으로서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 한 해당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 두 법의 형을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한다. 이에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조수복	관리번호 : CJA0000429	쪽번호 : 975~978

판 결

경기도 시흥군 서면(西面) 박달리(博達里), 노동(勞働), 조수복 28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하고자 대정 8년 3월 27일 밤에 피고가 거주하는 박달리의 주민을 선동하여 군중 약 30명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 양법의 형을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서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여 그 가벼운 구법인『보안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권성남 · 권순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381~385

판 결

본적지 경기도 가평군 군내면 마장리 629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권성남 23세(7월 9일생)

본적지 경기도 가평군 군내면 마장리,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권순 21세(10월 23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두 명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조선 각지에서 발발한 조선 독립 시위 운동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3월 15일에 피고 등의 거주지 주막 유흥권(柳興權)의 집 앞에서 이 운동을 하려고 모인 200여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독립 만세를 부름으로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2명이 본 법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헌병하사[伍長] 후쿠다(福田慶吉)가 가평(加平)분견소장 앞으로 제출한 대정 8년(1919) 4월 9일부 범죄 인지서 중에 판시 일시(日時)에 가평군 북면 부민 다수와 함께 가평읍 내에 와서 군청 · 보통학교 및 면사무소 등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당시 같은 피고 등에게 만세 부르는 것을 중지하라고 조용히 말했으나 추호도 듣지 않았다.

조선이 독립하면 만세 부르는 것을 중지하겠으나 독립하기까지는 계속하여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큰 소리로 토로하고 그 소재를 감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등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 양법의 형을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서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여 그 가벼운 구법인『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 규정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이회명 · 정윤삼 · 김순갑	관리번호 : CJA0000420	쪽번호 : 489~499

판 결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97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이회명 57세(9월 28일생)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대리 458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정윤삼 38세(6월 21일생)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대리 244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김순갑 35세(3월 15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회명(李會明)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정윤삼(鄭允參) · 김순갑(金順甲)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이회명은 대정 8년(1919) 3월 1일에 손병희 등이 기도한 조선 독립 운동의 의거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한 시위 운동 방법으로써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칠 것을 도모하여, 같은 달 28일 밤에 첨부[肩書]와 같은 피고 등이 사는 마을 음식점 박조이[朴召史]의 집 앞에서 다수의 마을 사람을 규합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고, 또 위 군중들에게 "내일도 역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집합하라"고 말하여 두고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다음 날 29일 이른 아침에 위의 박조이의 집 앞에서 다수 마을 사람을 모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구한국 국기를 흔들며 맨 앞에 서서 같은 면의 면사무소 앞에 가서 먼저와 있는 같은 면 사대

리(査垈里) 및 부곡리(釜谷里)의 주민과 합쳐 약 300명의 무리가 되어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고,

피고 정윤삼(鄭允參)과 김순갑(金順甲)은 같은 날 아침에 같은 면 교현리(橋峴里)의 마을 사람들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한다는 것을 듣자 그 거사에 찬동하여 구 한국기(증 제1호)를 만들어 이를 흔들며 모인 다수 마을 사람들의 맨 앞에 서서 같은 면의 면사무소 앞에 가서 앞의 피고 이회명이 인솔한 집단과 합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침으로써 피고 등 모두가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이회명의 대정 8년 3월 초순에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한 이래 각지에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친다는 것을 알았고, 같은 달 28일 오후 9시에서 10시 무렵에 살고 있는 마을의 박조이 집 앞에서 마을 사람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친 적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정윤삼의 마을 사람을 규합한 적이 없다고 변론한 것 외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김순갑의 마을 사람을 규합한 점을 제외하고 판시와 동일한 요지의 자백,

1. 검사의 피고 이회명 신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기재와,

1. 검사의 피고 정윤삼 신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기재와,

1. 검사의 피고 김순갑 신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기재와,

1. 헌병의 증인 홍철후(洪哲厚) 조사서[聽取書] 중에 대정 8년(1919) 음력 2월 28일 아침에 거주 마을의 김완순(金完順)이란 자가 거주 마을 각 집을 돌며 오늘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나와라, 응하지 않으면 방화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두려움에 보호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 부곡리 이성완(李聖完)의 집 앞으로 갔더니 같은 마을 및 교현리 사람 약 300명 정도와 피고 이회명을 선두로 삼아 태극기를 흔들며 와서 자기에게 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말하며 자신을 군중 속으로 끌어들였고, 피고 이회명은 군중의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하면서 만세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날의 군중은 같은 피고가 규합한 모양으로 자신의 거주 마을 유사준(劉士俊) 외 3명이 경성(京城)으로 솔잎을 운반하기 위해 교현리까지 갔다가 같은

피고가 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하며 경성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일동이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와,

1. 같은 증인 임노마(林老馬) 신문조서 중에 대정 8년(1919) 3월 29일에 장흥면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 만세를 부른 적이 있는데, 주모자는 피고 이회명으로 전날 즉 3월 28일 오후 9시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거주 마을 박조이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 14~15명의 마을 주민 등이 만세를 불렀고 피고 이회명은 대한국이 독립하기 위해 만세를 부른다고 말하기에 자신도 같은 장소에서 밤중 무렵까지 만세를 부르짖다가 해산할 때에 이회명은 내일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만세를 부를 것이니 일동 집합하라고 말하므로, 다음날 아침에 박조이 집 앞에서 피고 이회명 외 마을 주민 약 50명이 이미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이회명은 태극기를 내세워 군중을 지휘하며 "오늘 면사무소로 갈 것이니 너희도 이 깃발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기에 자기도 이를 휴대하니 피고 이회명이 군중의 선두에 서서 무리를 지휘하여 면사무소 앞으로 가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때 군중이 약 300명 정도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와,

1. 같은 증인 홍철후 신문조서 중에 대정 8년 3월 29일 사대리 마을 사람들은 장흥면 면사무소 앞에 전부 집합하여 부곡리 마을 사람들과 뒤섞였는데 피고 이회명은 군중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세를 부르도록 선동하였고, 사대리에서는 피고 정윤삼 · 김순갑이 태극기를 만들어 가져왔고, 또 두 사람이 주모자로 움직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와,

1. 압수에 관계된 구 한국기가 현존하는 등을 종합 참작하면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보니,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량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해 신 · 구 양법을 비교 · 대조하면,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되며 또 피고 이회명의 행위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야 하고,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되며 또 피고 이회명의 행위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법의 형량이 가벼우므로 위 구법의 각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정한 바 형량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기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범죄에 사용한 피고 등의 소유물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는 것으로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김병선 · 권홍규	관리번호 : CJA0000413	쪽번호 : 1154~1159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蒲谷面) 삼계리(三溪里) 172번지, 농업, 일명 김병하(金秉夏)인 김병선 68세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146번지, 농업, 권홍규 41세

위의 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横田義太郎)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권홍규(權洪圭)를 징역 6월에, 피고 김병선(金秉善)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대정 8년(1919) 음력 2월 27일 용인군 모현면(慕賢面) 지방에서 많은 수의 같은 면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피고가 사는 마을을 통과하자 이를 보고 있던 다수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에 주민의 출동을 요구하고 이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수여면(水余面) 유방리(柳防里)로 가서 치안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이상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 권홍규가 올해 음력 2월 28일 군중과 함께 수여면 둔전리(屯田里)까지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피고 김병선이 같은 날에 모현면의 김명화(金明花) · 김동호(金東浩)가 와서 자기에게 "독립 만세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방화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권홍규와 함께 수여면 유방리까지 갔다는 내용의 진술,

1. 검사의 권홍규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에,

올해 음력 2월 28일에 삼계리 · 둔전리의 주민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도록 권하여 주민 수십 명을 인솔하여 모현면에 이르러 그곳에서부터 김량장(金良場)으로 가기 위해 둔전리를 거쳐 유방리로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권홍규 신문조서에

음력 2월 27일 모현면 초부리(草芙里) 사람 수백 명이 자신의 마을에 와서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위 무리를 따라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엄태평(嚴泰平) 신문조서에

올해 음력 2월 27일 삼계리 사람이 만세를 부르며 자신의 마을에 왔을 때 피고 김병선 · 권홍규가 증인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선동하고, 그때 증인은 조선이 독립하니까 만세를 부르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위 범행 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 · 제10조에 의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형과 앞에 보인 제령 제1조의 형과 대조하고 전자(前者)가 가벼우므로 그 정한 바의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이중인 · 이중항 · 윤의완	관리번호 : CJA0000408	쪽번호 : 436~444

판 결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彦州面) 역삼리(驛三里) 124번지 재적 거주, 농업(종교 무), 이중인 29세(1월 4일생)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124번지 재적 거주, 농업(종교 무), 이중항 23세(7월 3일생)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291번지 재적 거주, 농업(종교 무), 윤의완 52세(3월 13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공무 집행 방해의 각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다나마(玉名友彦)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중인(重仁)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중항(重恒) · 의완(宜完)을 각 태(笞)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 이중인(李重仁)은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선언하였다는 것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서 발발한 조선 독립 운동의 거사에 찬동하여 이를 성원하는 수단으로 대정 8년(1919) 3월 28일 밤 위의 피고 등의 거주지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뒤에 있는 산 위에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횃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함께 불러 치안을 방해하였고,

제2. 피고 이중인과 이중항은 형제로서, 그의 아버지 이정익(李廷翼)이 전부터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新東面) 양재리(良才里)에 있는 국유지인 밭 10마지기 반일갈이를 대여 받아 소작을 하며 살았는데 그 후 같은 면에서 같은 면 같은 소재지에 있는 국유지를 면의 묘목장[苗圃]으로 지정한 결과 대정 8년 2월 15일에 피고 등으로부터 위의 소작지를 반환시키고 같은 해 3월 18일에 같은 면 임무계(林務係) 서기 이병찬(李秉燦)에게 명령하여 직원 1명과 함께 앞

에 적은 피고 등이 소작하던 같은 면의 국유지에 출장가게 해서, 면 묘목장을 경작 중이었는데 전부터 소작지 탈취로 불평을 품고 있던 피고 2명은 그 장소에 가서 이병찬에게 "무슨 까닭에 소작지를 빼앗는 것인가? 경작을 중지하지 않으면 농기구를 부수겠다"고 협박하여 그 서기로 하여금 묘목의 경작을 중지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제3. 피고 윤의완은 빌려서 소작하던 국유지 밭 540평, 논 1마지기 5되지기[升落]의 소작권을 탈취당한 것에 분개하여 같은 달 23일에 그 논밭에 면의 묘목장을 경작하기 위해 다수의 부역직원[賦役人吏]을 이끌고 출장 온 면서기 이병찬에게 "너는 위의 논밭을 소작인으로부터 거둬들이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묘목장을 경작한다고 하니 불합리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묘목장을 설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협박하여 그 서기로 하여금 면의 묘목장 설치를 중지하게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등이 본 법정에서 면서기 이병찬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외의 판시와 같은 요지의 진술,

1. 검사의 증인 이병찬 조서 중 판시와 같은 방해 사실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

1. 검사의 증인 이한구(李漢九) 조서 중 자신은 신동면장으로 같은 면 양재리 소재의 국유지를 피고 중인 · 중항의 아버지 이정익(李廷翼)에게 소작케 하던 것을 탈취하고 군청의 지정에 따라 면의 묘목장[苗圃]을 설치하기 위해 대정 8년 3월 18일에 신동면 서기 이병찬에게 직원 1명과 함께 면 묘목장 설정지에 경작을 하기 위해 간 적이 있고 또 권업계(勸業係)의 주임서기에게 묘목장 설치 등의 장소에 스스로 인부를 데리고 경작하며 거주하던 것이고, 이병찬은 같은 계의 주임 서기로써 시흥군수의 통지로부터 3월 21일과 22일을 신동면의 종자를 옮기는 날로 지정함으로써 3월 18일에 묘목[苗床]을 경작하러 간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 기재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이중인의 판시 제1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 양법을 비교하고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구법인『보안법』제7조 및『조선형사령』제42조

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등 3명의 공무 집행 방해의 행위는『형법』제95조에 각기 해당하여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조의 정한 바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이중항 · 윤의완을 각기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정상(情狀) 참작에 의해『조선태형령』제1조 · 제4조에 준하여 각기 태(笞) 90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 이중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가 함께 드러났으므로『형법』제45조 · 제47조 · 제10조에 따라 무거운 공무 집행 방해죄의 형에 법률에 정한 가중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고,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02조에 준하여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타(平田泰次郎)

조구원 외	관리번호 : CJA0000413	쪽번호 : 1109~1116

판 결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府內面) 신문리(新門里) 132번지, 예수학교 교사 겸 매일신보 기자 기독교도, 조구원 23세(3월 4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40번지 재적 거주, 일본생명보험회사 권유원(勸誘員) 기독교도, 고제몽 25세(5월 29일생)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길직리(吉稷里) 473번지 재적,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32번지 거주, 합일학(合一學) 교사 기독교도, 구연준 33세(11월 3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464번지, 무직 기독교도, 김한영 20세(9월 16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387번지 재적 거주, 종교 무, 김영희 25세(2월 5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관청리(官廳里) 550번지 재적 거주, 대서업(代書業) 보조자 기독교도, 조봉암 21세(9월 25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74번지 재적 거주, 보성고등보통학교 4년생 기독교도, 오영섭 18세(5월 25일생)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144번지 재적 거주, 잡화상 기독교도, 주창일 19세(7월 29일생)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조구원(趙龜元) · 고제몽(高濟夢)을 각 태 90에 처한다.

피고 오영섭(吳永燮)을 태 6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각기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공소 소송비용 중 감정인 나리타(成田碩內) · 구라타(倉田敏助) · 나가네(長根藤)에게 지급한 일당 및 수당은 피고 조구원 · 고제몽 · 오영섭이 평등하게 부담한다.

피고 구연준(具然濬) · 김한영(金翰永) · 김영희(金永禧) · 조봉암(曺奉岩) · 주창일(朱昌日)은 모두 무죄.

이 유

피고 조구원 · 고제몽 · 오영섭은 모두 전부터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인데, 대정 8년 3월 1일에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를 원조할 운동으로, 대정 8년 3월 20일 무렵에 오른 쪽에 첨부된 피고 등의 거주 마을에서

1. 피고 조구원은 같은 곳 강화경찰서 내 경부 이해용(李海用) 앞으로 그의 자필로 "조선 독립 운동에 찬동하니 독립 운동자를 검거하지 말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목을 베어 죽이거나 방화할 것이다"는 요지의 문서(증 제6호)를 우편으로 보내고,

1. 피고 고제몽은 같은 곳 잡화상 유종식(俞鍾植) 앞으로 그의 자필로 "조선 독립 운동에 찬동하여 그 기운을 왕성하게 하려니 점포를 폐쇄하라"는 문서(증 제3호)를 우편으로 보내고,

1. 피고 오영섭은 같은 곳 강화경찰서 순사부장 노리요시(紀喜美安) 앞으로 그의 자필로 "조선 독립 운동자를 검거할 때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는 뜻의 문서(증 제7호)를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같은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조구원 · 고제몽 · 오영섭의 각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한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 조구원 · 고제몽을 각기 징역 3월에, 피고 오영섭을 징역 2월에 각각 처할 것이나 정상참작으로 인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에 따라 각 태형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공소소송비용 중 감정인 나리타(成田碩內) · 구라타(倉田敏助) · 나가네(長根藤)에게 지급한 일당 및 수당은 같은 법률 조항 제201조에 따라 피고 조구원 · 고제몽 · 오영섭이 부담한다. 피고 구연준 · 김한영 · 김영희 · 조봉암 · 주창일 등이 대정 8년 3월 20일 무렵 조선 독립 운동을 공모한 후, 「자유민보」 외 십 수 종의 불온문서를 작성하여 강화읍내에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는 공소(公訴)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

김창실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397~403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瓦石面) 교하리(交河里) 357번지, 농업, 김창실 3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오야마(小山正生)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손병희(孫秉熙)가 발표한 조선 독립 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25일에 거주지 마을 염규호(廉圭浩) 집에서 같은 사람 및 김수덕(金守德) · 김선명(金善明)과 회합한 후, 격문을 배부하고 면민을 규합하여 독립 시위 운동을 할 것을 협의하고 즉시 같은 장소에서 위 염규호 등이 등사판을 사용하여 '오는 28일에 일동이 산에 집합해야 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등사한 불온문서 60매의 일부를 같은 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와석면 당하리(堂下里) 지방에 반포함으로써 이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의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하여 경성, 기타 각 지방에서 만세를 부르는 독립 시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알고 있었고, 자신은 손병희의 독립 선언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진술,

1. 김수덕 · 김선명 · 염규호 · 임명애(林明愛)의 제1심 공판 시말서 중에

김수덕이 3월 25일 밤 염규호의 집에서 공동피고인[相被告][3] 김선명과 함께 군중을 모아 독립 운동을 할 것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출판물을 발행하게 되었다. 염규호가 원고를 작성하고, 김선명이 등사판으로 "오는 28일에 산으로 일동이 집합해야 하며 만약 집합하지 않으면 그 주택에 방화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문서 약 60매를 인쇄하고 이를 3분하여 김선명 · 염규호 · 김창실이 배부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배부한 것은 김창실이었다. 위의 출판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검사의 피고 김창실 제2회 신문조서에

올해 3월 25일 염규호 집에서 같은 부부 및 김수덕 · 김선과 회합하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군중을 규합하기 위해 격문을 배부하기로 하고 같은 5명의 기안에 기초하여 염규호가 집필하여 등사판을 사용하여 격문 60매를 출판하고, 자신이 와석면 당하리 · 와동리(瓦洞里) 마을 주민에게 배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 중 인쇄물의 반포는 출판법 제11조 제1항 3호,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치안 방해는 범죄 당시 법령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대정 8년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령 제1조에 해당하는 바, 위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54조 제10에 따라 무거운 『보안법』의 형에 따른다. 위 출판법 위반 및 제령 위반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54조 ·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제령 위반의 형에 따른다. 『형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를 적용하여 신 · 구법의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 『보안법』에 따라 징역 3월에 처하는 바, 『조선태형령』 제1조 제4조를 적용하여 태형을 부과하고,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

3) 동일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경우에 이를 공동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이라 한다.

심혁성 외	관리번호 : CJA0000407	쪽번호 : 804~827

판 결

주소 및 본적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오류리 22번지, 농업, 심혁성 32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다남리 98번지, 농업, 일명 이태현(李泰鉉)인 이담 41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48번지, 농업, 최성옥 48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22번지, 노동업, 전원순 45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약품행상[賣藥行商], 임성춘 47세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244번지, 농업, 이공우 44세

위의 자들에 대한 소요 · 훼기(毁棄) ·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와(山澤佐一郎)가 관여하여 피고 이공우는 궐석한 상태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담을 징역 2년, 피고 전원순 · 최성옥을 각기 징역 10월, 피고 심혁성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위 피고 4명은 미결 구류일수 90일을 각기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임성춘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같은 피고의 미결 구류일수 6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 이공우를 벌금 20엔(圓)에 처한다.

위 벌금을 완납이 가능할 때는 같은 피고를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 물건 중 령 제1호 구 한국 국기는 이를 몰수하고, 기타는 각기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 심혁성(沈爀誠)은 일 · 한 합병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가 올해 3월 이래 손병희 등의 독립 선언에 이어 조선 각지에서 독립 운동이 개시되자 이를 기회로 같은 해 3월 24일 오후 2시 무렵에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시장에서 증 제1호 국기를 휘두르며 그 곳에 모여든 군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함으로써 독립 시위 운동을 해 치안을 방해하였고,

제2. 피고 임성춘은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 경계를 서기 위해 앞에 적은 시장에 출장 나온 부내(富內) 경찰관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 니노미야키(二宮喜三次) 및 응급순사 3명이 심혁성을 범인으로 이를 체포하여 끌고 가려 하매, 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 순사들을 뒤따르며 심혁성의 석방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그 순사가 이를 들으려하지 않자, 그 순사 뒤에서 군중을 향해 "가자! 가자!"라고 연달아 외치면서 암암리에 심혁성을 순사들의 손에서 탈취하도록 사주하자 300여 명의 군중은 이에 힘을 얻어 순사의 후방에서 "순사를 박살내버리자" 등을 부르짖고, 곧 그 속의 20여명이 그 순사의 신변에 육박하자 그 순사가 칼을 뽑아 위 공범자 1인인 이은선을 넘어트리고 뒤돌아서자 군중이 주먹으로 순사 4명의 신체 각 부위를 난타한 끝에 심혁성을 순사의 손에서 탈환하였고,

제3. 피고 이담은 같은 날 이은선의 죽음을 듣고 이를 애석해 한 나머지 순사의 처치를 분하게 여겨 면민을 규합하여 크게 들고 일어나 순사에게 그 죽은 원인을 힐문하고자 하여 그 날 밤에 계양면 면장 안병혁(安炳赫) 및 같은 서기 이경응(李敬應)에게 의뢰하여 "죽은 사람을 동정하는 자는 오늘 밤 오후 12시에 계양면 사무소에 집합하라"는 뜻으로 쓴 통문을 만들어 이를 각 마을에 돌렸기 때문에 같은 12시 무렵에 약 200명의 군중이 위의 면사무소에 모였으나 앞에 적은 이경응이 그 장소에 참석하기로 하고 소재를 알 수 없자 이를 분개하여 위 군중에게 '이경응은 이미 범한 죄가 있어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집을 부숴 버리라'고 선동하여 100여 명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를 인솔하였고,

피고 최성옥 · 전원순 · 이공우는 이를 수행하여 계양면 선주지리(仙住地里) 이경응의 집에 도착하였고, 군중은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사방의 벽을 부수고 또 같은 안방 내의 집기 등을 깨뜨려 버리는 등 폭행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이담은 그 우두머리[首魁]가 되어 그 집의 대문 및 안방의 벽을 소지한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피고 최성옥 · 전원순은 많은 무리를 솔선하여 대문 및 안방 등의 벽을 파괴할 때 무리의 기세를 돋우어 주매 이경응 등 가족의 거실 및 그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대문과 기둥 전부를 훼손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심혁성의 판시 제1과 같은 취지의 자백 및 그 날 같은 시장에서 순사 4명에게 체포되어 부내경찰관주재소로 끌려오는 때 위 시장에서 200~300미터 거리에서 100여 명의 군중 속 성명 미상의 4~5명이 자신을 되찾으려고 소동을 벌였다는 요지의 진술, 피고 이담의 올해 3월 24일에 친족인 이은선이 순사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곧바로 면사무소에 가니 시체는 사무소 앞에 두었다 하므로 조그만 협실로 옮겼는데, 그대로 장례를 할 수 없었기에 면장에게 상담하였더니 면장이 구장에게 상담하자고 하여 면장에게 첨서(添書)를 부탁하였다. 위 첨서(添書)의 내용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나 당 12시에 집합하라는 말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은 집필자인 서기로부터 들었다. 위 소개장을 각 구장에게 회송(回送)시킨 결과 약 100명의 마을 주민이 면사무소로 모였다. 처음에 면장에게 첨서(添書)를 부탁하여 시장의 송희진(宋凞晋)의 집에서 이를 작성할 때 면서기인 이경응은 그 장소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고 중도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마을 주민 회합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면장의 주의를 받아 이경응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도 역시 아파서 누워있다고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에 자신은 되돌아왔다. 이어서 면장이 찾아갔다가 돌아와 이야기하기를 이경응이 부재중이라고 들었다고 하기에 면장에게 이경응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 순사에게 명하여 이은선을 살해시킨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은선이 살해당하여 홧김에 사실 실행의 의사 없이 이경응의 집을 파괴해버리자고 면사무소 앞의 군중 속에서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군중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경은의 집으로 몰려간 것인데, 같은 사람의 집을 부수는 소리가 있어서 구장과 함께 중지시키려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

1. 예심판사의 증인 니노미야키(二宮喜三次) 신문조서

올해 3월 24일은 장기리 장날로 만일을 염려하여 증인 및 응원순사 3명과 함께 동(同) 시장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경 만세 소요가 시작되었기에 그 중에서 깃발을 흔들며 돌고 있는 심혁성을 붙잡아 면사무소까지 왔는데 군중이 뒤에서부터 만세를 외치면서 미행해 와서 해산을 명령하였고 대부분 해산하였으나 약 300명은 발을 벋디디고 머무르며 증인들에게 심혁성의 방면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5시 무렵 증인들이 심혁성을 연행하여 주재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300여 군중이 몽둥이 또는 돌을 들고 뒤에서부터 쫓아오면

서 심혁성의 반환을 강요하였다. 피고인 임성춘은 증인들의 앞으로 와서 두 손을 모아 심혁성의 방면을 부탁하고 후방으로 돌아가서는 "어서 가자, 가자"고 군중을 지휘 · 선동하였다. 군중은 이에 힘을 얻어 증인들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임성춘은 약품판매상[賣藥商]을 경영하는 관계상 그의 집에 검사하러 갔었고, 장날 등에 같은 사람과 만났기에 낯익은 사이인데 그날 같은 사람이 군중을 선동하는 바를 목격하였다. 증인들이 시장에서 50~60칸(間) 떨어진 곳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길을 막고 심혁성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같은 사람을 재촉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증인들의 설득도 듣지 않고 오히려 증인들의 후방에서부터 머리 부분 및 각 부분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또는 치면서 끝내 심혁성을 증인의 손에서 탈취하여 도망감으로써 증인들이 추적하려고 하였는데, 앞길을 가로막으며 증인들을 구타하여 방해를 하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았는데 저들은 심혁성을 두고 도주하였다. 그 때 이은선이 검에 찔려 사망하였다. 증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자는 약 20명이라 사료되고 군중 속에 몇 사람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증인의 후방에서부터 심혁성을 돌려주지 않으면 순사를 죽이거나 때리자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예심판사의 증인 안병혁(安炳赫) 신문조서에

3월 24일 증인은 면사무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이담이 쫓아와서 이은선이 살해당하였으니 구장에게 통지하여 사람을 모아서 주재소로 가서 사인(死因)을 확인하려고 하니 그 회문(回文)을 적어 달라고 부탁하기에 임대규(林大圭) 및 면서기 이경응과 함께 시장의 송희진 집으로 갔고 서기 이경응이 이담의 말에 따라 회문의 초안(草案)을 작성하였다. 위 초안의 뜻은 오늘 시장에서 순사 때문에 살해당한 이은선의 사인을 주재소에 질문할 것이니 죽은 자에게 동정하는 자는 오후 12시에 면사무소로 모여 달라고 적혀있었는데, 이경응은 초안을 적은 후 집으로 돌아갔고, 증인과 임대규가 위 초안에 따라 회문 10여 매를 작성하여 각각 배포한 결과 200명 이상 면사무소로 모였다. 그 때 이경응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담은 그 때 이경응은 고급 서기로 있으면서 오지 않은 것을 보건대 그는 국어(일본어)를 할 줄 아니 순사에게 이은선을 죽이라고 교사한 것 같고, 무언가 원인이 있어 오지 않은 것 같으니 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외출하였다가, 이경응이 부재중이라고 돌아와서 말하였다. 이어서 김영권(金永權) · 박윤칠(朴允七) 등이 보러 갔다가 모두 돌아와 이경응이 부재중이라고 말하였고, 증인도 갔었는데 부재중으로 시장에 간 모양이므로 면사무소로 되돌아가서 시장에 간

것 같다고 하니 이담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이경응의 집을 부수러 가자. 당신도 가자”고 말하고 증인의 등을 밀어서 증인은 100여 명과 함께 이경응의 집으로 몰려갔다. 이공우는 가는 중에 초롱에 불을 켜고 증인과 함께 갔었다. 증인들이 이경응 집의 실내로 들어갈 때 바람 때문에 실내의 불도, 이공우의 불도 꺼져서 어두워졌는데 누군가 실내의 도구를 부수기 시작하였다. 증인이 구장과 함께 저택 밖에 있을 때 군중은 가옥도 때려 부수었다. 군중이 일단 면사무소로 돌아왔을 때 이담은 주재소로 사인을 힐문하러 가자고 말하였는데 증인은 그를 달래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였다. 이담은 증인들이 송희진의 집에서 회문을 적을 때 시장에서 군중에게 이경응의 집을 부수자고 말하고 면사무소 앞마당에서도 동일한 선동을 하였기 때문에 군중은 이경응의 집으로 몰려간 것인데, 이담은 군중의 선두에 있었고 가면서도 동일한 말을 하였다. 증 제4호의 회문 중 날인이 없는 것은 이경응이 적은 초안(草案)이고, 날인이 있는 부분은 증인이 적은 것으로 이 회문(回文)을 돌렸기 때문에 최성옥(崔成玉) · 전원명(全元明) · 이공우(李公雨)는 면사무소에 왔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최성옥 신문조서에,

3월 24일 밤에 죽은 사람의 친족인 사람들이 여러 번 불러서 갔는데, 이경응이 오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이 죽었음에도 오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고 말하고 일동도 그렇다고 말하며 함께 이(경응) 서기의 집으로 몰려가기에 자신도 동반하여 대문을 부수고 벽을 훼손하였다. 최춘일(崔春日) · 전원순이 죽은 사람의 친족과 함께 벽을 부수고 기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순사부장인 하나세(花瀨勳)의 보고서에

3월 24일 시장에서 심혁성을 체포하였는데 임성춘이 “그를 석방하라. 석방하지 않으면 완력으로 호소하겠다”고 말하고 후방으로 돌아가서 “가자, 가자”라고 선동하여 자신들 순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포승줄을 끊고 심혁성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내용의 기재

1. 예심판사의 검증 조서에

이경응 집의 24일 밤 피해는 대문, 외양간, 마루방, 건넌방 등의 벽기둥, 출입구 문짝 등으로 벽 등은 대부분 파괴되어 그 부분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고, 대문은 양측 벽으로 외양간 및 헛간에 좁더라도 지붕이 있는 1동의 건물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 심혁성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 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다.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를 적용하여 가벼운『보안법』의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임성춘의 행위 중에 소요의 점은『형법』제106조 제2호에, 공무 집행 방해의 점은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 법령에 의한 피구금자의 탈취의 점은 같은 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 위 3죄는 하나의 행위로써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앞부분 · 제10조에 의해 소요죄를 무거운 것으로 하여 그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이담 및 최성옥 · 전원명의 행위 중 건조물 손괴는 같은 법 제260조에, 소요는 이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호에, 최성옥 · 전원명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건조물 손괴 및 소요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앞부분 · 제10조에 의해 모두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따라 그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 각 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를 처단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주문 소재의 미결 구류일수를 각 피고의 본 형에 함께 계산한다. 피고 이공우의 소요 행위는 같은 법 제106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정한 바 벌금형 범위에서 처단하고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같은 피고를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1호는 피고 심혁성의 소유로 범죄에 쓰인 물건이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02조에 의해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이공우는 궐석하였으므로 본 판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본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정 8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다치카와(立川二郎)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손흥복 · 조병직 · 김동건	관리번호 : CJA0000409	쪽번호 : 788~791

판 결

경성부 당주동 72번지, 학생, 손흥복 16세(1월 7일생)

경성부 황금정 2정목 38번지, 학생, 조병직 21세(7월 5일생)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독도리 166번지, 학생, 김동건 17세(11월 1일생)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후지무라(藤村英)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흥복(興福) · 병직(炳直) · 동건(東健)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흥복 · 병직은 모두 뚝섬공립간이농학교, 피고 동건은 뚝섬공립보통학교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의 선언을 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12일 함께 모의한 끝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써 고양군 독도면 서독도리에서 피고들 소속 학교의 학생을 규합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 시위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여, 그날 방과 후 뚝섬공립보통학교 및 간이농학교 학생 모두 30명에게 조선 민족의 독립 운동에 찬동하여 서로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한 후, 스스로 솔선하여 위 학생들 30명과 함께 위 공립보통학교 앞에서부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 지역 우편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 시위 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해서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흥복 · 병직의 본 법정에서 한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피고 동건이 본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날짜에 피고 흥복 · 병직 및 학생 30명 정도와 함께 위 보통학교 앞에서부터 우편소 앞에 이르기까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돌아다녔다는 요지로 한 진술,

검사의 피고 동건에 대한 신문조서 중 자신은 판시의 날짜에 다른 학생에게 독립 운동에 찬성하여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의 피고 동건에 대한 신문조서 중 판시의 날짜에 자신은 피고 병직 및 흥복 등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하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하여 신 · 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 · 대조하니 구법인『보안법』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정한 바의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김수근 · 안중식 · 박지양 · 허진 · 서상오	관리번호 : CJA0000416	쪽번호 : 397~399

판 결

경성부 돈의동 29번지, 고물행상, 김수근 33세

경성부 와룡동 31번지, 인력거꾼, 안중식 37세

경성부 돈의동 1번지, 잡화상, 박지양 34세

경성부 와룡동 163번지, 중매업, 허진 35세

경성부 익선동 83번지, 재봉틀기 판매업, 서상오 3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다자이(太宰明)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수근 · 중식 · 지양 · 진 · 상오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손병희 일파가 조선 독립을 선언을 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3월 24일 무렵에 경성부 돈화문통[4] 및 그 부근의 도로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행동을 하여 치안과 안녕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 상오(相午)의 본 법정에서 한 해당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사법경찰관의 피고 김수근(金壽根) · 안중식(安重植) · 박지양(朴至陽) · 허진(許榛)에 대한 신문조서 중 해당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4) 현재의 창덕궁–종로3가역–을지로3가역–충무로를 잇는 '돈화문로'로, 1913년 창덕궁과 남산(총독관저)을 잇는 남북 직통도로로 공사가 시작되어 1921년에 완료되었다.

피고들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하여 신 · 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 · 대조하니 구법인『보안법』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그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박창룡	관리번호 : CJA0000419	쪽번호 : 890~891

판 결

경성부 이화동 54번지, 신발제조공[靴職工], 박창룡 2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 각 지역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거사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 4월 1일 경성부 낙타산[5] 산길에서 단독으로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5)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와 동대문구, 성북구에 걸쳐 위치한 산(97m)으로, 산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해서 낙타산, 타락산(駝駱山) 또는 낙산(駱山)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천만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180~182

판 결

경성부 종로 5정목 134번지, 목기상, 이천만 1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하나무라(花村美樹)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손병희 등의 조선 독립 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3월 23일 밤 경성부 동대문 내에서 군중과 같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과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는데, 위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해 신 · 구 두 법을 비교 · 대조하니 구법인『보안법』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정해진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김학봉 · 김창순 · 서인필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350~355

판 결

본적지 경성부 장교정 63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무직(종교 무), 김학봉 17세(11월 25일생)

본적지 경성부 장교정 23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전차 차장견습(종교 무), 김창순 18세(10월 17일생)

본적지 경성부 관철동 59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전차 차장견습(종교 무), 서인필 20세(1월 22일생)

위 사람에 대한『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최호선(崔浩善)이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학봉(金學鳳)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서인필(徐仁弼) · 김창순(金昌順)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김학봉은 대정 8년(1919) 3월 10일 김도영(金道英)이란 사람으로부터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13매 및「조선독립신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5매의 교부를 받고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사정을 자세히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주소지인 피고 김창순의 집 문 앞에서 위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 중 5매를 같은 피고에게, 같은 8매는 피고 서인필에게 반포하고, 그 나머지 위 인쇄물은 경성부 장교정 및 황금정에서 다른 사람(이름 모름)에게 반포하고,

피고 서인필은 같은 날 피고 김창순 집 앞에서 피고 김학봉으로부터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8매의 교부를 받고,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 중 2매 정도를 경성부 장교정 및 관철동 부근 민가에 반포하고,

피고 김창순은 같은 날 위의 집 앞에서 피고 김학봉으로부터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문'이라

는 제목의 인쇄물 5매의 배부를 받고,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 문서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날 그 중 1매를 그 인근 민가(이름 모름)에 반포함으로써 피고들은 모두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3명의 본 법정에서 각각 그 행위에 대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순사 기토(鬼頭義二) 외 1명의 경성 종로서장 앞 대정 8년 4월 7일부 동행보고서 중에 피고 김창순은 대정 8년 3월 10일 무렵 자신의 집에서 피고 서인필과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의 배부를 서로 모의하고, 피고 김학봉으로부터 '한국 독립에 관한 경고' 5~6매를 빌려 받고 그날 밤 경성부 내 관철동 58번지 이근호 집 외 여러 집에 배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

1. 순사 수수키(須須木定四郎)의 경성 종로서장 앞 대정 8년 4월 11일부 동행 보고서 중에 피고 김학봉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경성부 내 관철동 59번지 서인필 및 김창순 2명에게 자기 집에 동거하는 본래 강원도 금강산사 승려가 (경성)부내 계동 1번지 중사학교 학생 김도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등사판으로 된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 40매를 빌려 받아 배부한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기재 등으로 보아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판시에 나오는 피고 등의 각 행위는『보안법』제7조에 각기 해당하므로『조선형사령』제42조에 의해 형명을 변경하여 정해진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김기영 · 최진순	관리번호 : CJA0000410	쪽번호 : 350~355

판 결

경성부 수하정(水下町) 18번지,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생, 김기영 22세

강원도 울진군 북면 검성리(劍城里), 선린상업학교 3학년생, 최진순 19세

위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기영(金基英) · 최진순(崔璡淳)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이에 찬동하고,

제1. 피고 두 명은 대정 8년(1919) 3월 1일 오후 2시 무렵부터 경성부 종로통(鍾路通)[6] 기타 장소에서 학생 기타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경성부 내를 광분하여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하고,

제2. 피고 최진순은 위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4월 2일부터 다음날 3일에 걸쳐 위의 자기 집에 놀러 온 이동석(李東錫) 외 여러 명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김기선(金箕鮮)이란 자로부터 받아 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고 조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독립해야 한다"고 기재한 경고문,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기재한 「반도목탁」이라고 제목 붙인 문서, 또 지금 독립 운동을 하는 김윤식(金允植) · 이용식(李容植)과 호응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선독립신문」 등을 나누어줘[交付] 정치

6) 종로의 큰길을 종로통이라 속칭하나 본래 '토리(通)'는 남북을 잇는 도로에 붙여지는 것으로 대정 3년(1914) 4월에 제정되었다. 즉 타이헤이토리(太平通), 코카몬토리(光化門通), 난다이몬토리(南大門通) 등이 있으나 지금에는 단지 넓은 길, 포장된 길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동서로 이어지는 쇼로토리(鐘路通), 코가네마치토리(黃金町通), 혼마치토리(本町通) 등이 남용되고 있다.(경성공립소학교교원회, 『속경성사화』, 1937)

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하고,

제3. 피고 김기영은 위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4월 10일 무렵 전에 타인에게 받은 위「반도목탁」이라는 제목의 조선 독립에 관한 불온한 문서를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4일 무렵까지 경성부 내 송현동(松峴洞) 기타 주민에게 배포함으로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각 해당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그 내용의 자백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보안법』제7조,『형법』제55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또 위 범행 후의 발포에 관계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형법』제55조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8조 · 제10조에 의해 신 · 구 양법을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 구법인『보안법』제7조를 적용해서 그 정한 바의 형량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헤아려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라이(新井胖)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정성봉 · 정성룡 · 김술근 · 안신영 · 윤내진	관리번호 : CJA0000429	쪽번호 : 776~780

판 결

주소 및 본적 모두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서세교리[7] 55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정성봉 22세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서세교리 55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정성룡 20세

주소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8] 연희전문학교 내 같은 학교 학생, 본적 평안남도 대동군 우평면 상서리 예수교도, 김술근 22세

주소 및 본적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 46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안신영 18세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영천리 55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윤내진 2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郎)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정성봉(鄭聖奉)을 징역 8개월에, 기타 각 피고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대정 8년(1919)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의 무리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할 것을 알자 다중과 함께 시위 운동을 시도하여 조선의 독립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여 같은 날, 피고 김술근(金述根)은 경성부 종로 파고다 공원에 집합한 무리와 함께 조선 독립 만세라 절규하고, 피고 정성봉은 같은 장소에서부터 경성부 내 대한문 앞 및 광화문통[9]을 거쳐 같은

7) 현재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8) 현재의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부 서대문으로, 피고 윤내진(尹來鎭)은 같은 부 종로통에서부터 서대문정[10] · 죽첨정[11]을 거쳐 같은 부 남대문통[12] 조선은행 앞에서, 피고 정성룡(鄭聖龍)은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 앞까지 앞에 적은 집단과 함께 천천히 열을 지어 다니며 그 사이에 조선 독립 만세라 연호하고, 피고 안신영(安信永)은 앞에 보인 대한문 앞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라 부르며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본 법정에서 각 피고의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형법』제6조 · 제10조에 의하여『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와 제령 제7호 제1조의 형을 비교하여 가벼운 전자의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10)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1) 현재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2) 현재의 서울시 남대문로.

허정묵 · 김상우 · 최덕종	관리번호 : CJA0000413	쪽번호 : 850~855

판 결

본적 함경북도 길주군 동해면 창촌동 798번지, 주소 경성부 안국동 78번지 박영순 집, 학생, 허정묵 27세

본적 함경북도 성진군 학중면 농성동 439번지, 주소 경성부 안국동 78번지 박영순 집, 학생 예수교장로파, 김상우 24세

본적 함경북도 명천군 하석면 하평동 146번지, 주소 경성부 안국동 78번지 박영순 집, 최덕종 22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와(山澤佐一郎)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3명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모두 경성부 안국동(安國洞) 52번지 최한석(崔漢錫)의 집에 숙박하고 있으면서 대정 8년(1919) 3월 20일 무렵부터 다음달 4월 상순까지 2회에 걸쳐 같은 사람의 집에서 경성부 중동학교(中東學校) 학생 최하현(崔夏鉉)이라는 자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기재된 문서의 배부를 부탁받은 후 위의 문서를 경성부 안에 배포하여 다수의 조선인을 독립 운동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기로 하고 위의 기간 중에 피고 허정묵(許丁默)은 위의 서면 22매를, 피고 김상우(金相禹)는 15매를 경성부내 안국동에서, 피고 최덕종(崔悳鍾)은 30매를 경성부 운니동(雲泥洞)에서 다수의 조선인에게 배부하며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 허정묵이 올해 3월에 중동학교 학생 최하현이란 자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란 제목으로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므로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조선을 독립시켜야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12장을 배부할 것을 의뢰받고, 그 후 4월 상순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서면 10장을 받았고, 그 받은 장소는 2회 모두 이전의 하숙집인 경성부 안국동 52번지 최한석 집이고, 그 때 다른 2명의 각 피고도 있었고, 최하현으로부터 동일한 서면의 배포를 의뢰 받아서 자신은 앞에 적은 22장을 경성부내의 안국동 거리에 뿌렸다는 요지의 진술 및 피고 최덕종 공동피고인[相被告]과 함께 최하현으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란 제목의 서면을 2회에 30장을 받고 운니동의 각 곳에 배포하고, 그리고 위 문서에는 조선의 독립 운동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

1. 검사의 피고 김상우 조서에서,

올해 3월 20일 안국동의 최한석 집에서 최하현으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은 조선의 독립을 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의 배포를 의뢰받고 이런 문서의 반포는 정치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경성부내 안국동에 반포했다는 내용의 기재,

1. 검사의 같은 피고 제2회 조서에서,

최하현으로부터 반포할 것을 의뢰받은 「반도의 목탁」이라는 서면은 15장이었다는 내용의 기재로부터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3명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각 해당하는데 위 범행 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로부터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 · 제10조를 적용하여 신 · 구 양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 · 대조해서 가벼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정해진 형량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문명진	관리번호 : CJA0000406	쪽번호 : 156~162

판 결

경성부 도염동 28번지 재적 거주, 런던상회 사무원(종교 무), 문명진 32세(3월 3일생)

위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자와(山澤佐一郎)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명진(明鎭)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통유(通諭) 제1호 1매(제1호 증)는 이를 몰수하고 그밖에 나머지는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관립(官立) 영어학교 졸업생으로서 예전부터 조선 독립의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인데, 대정 8년(1919) 5월 13일 무렵 중국 상해(上海)로 가서 5월 25~26일 무렵 그 장소로부터 경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해에 거주하는 김보현(金甫鉉)이란 사람으로부터 「통유(通諭) 제1호」란 제목의 이승만(李承晩)이란 사람 외 여러 명의 명의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천만 동포에게 유고(諭告)한다. 대한 민족은 독립의 시운이 도래하였으므로 종래 학정(虐政)에 복종할 필요 없다.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재판에 복종하고 납세할 필요 없다"는 뜻의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구를 기재한 인쇄물 수십 매를 포장한 것의 교부를 받고, 그것이 조선 독립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5월 31일 경성에 도착하여 먼저 관헌의 주의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김홍작(金鴻爵)이란 사람에게 이를 맡겨 두고, 같은 해 6월 2일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 인쇄물 중 13매를 받아서 그 날로부터 같은 달 7일 무렵까지 경성부 내에서 경성부 종로통 1정목 위익환(魏益煥) 외 여러 명에게 배부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의 배포한 문서가 조선 독립에 관한 불온한 문서인 것을 알고 승낙한 것이지만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또 그 문서는 배포할 목적으로 상해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김보현으로부터 김홍작에게 교부하라는 의뢰를 받고 가지고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 외에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있고,

1. 검사의 김홍작 신문조서 중에 피고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대정 8년 5월 31일에 경성 광화문통 체신국 뒤편에서 종이 포장 1개를 교부하여 자신은 상해로부터 돌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헌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잠깐 맡아 달라고 하고 자세한 것은 오늘 밤 이야기 하자고 하여 작별하고, 그날 밤 피고는 자신을 방문하였으므로 아까 맡겼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한 통유문(通諭文)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6월 2일에 피고는 아직도 관헌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위의 인쇄물 중 13매만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가 있고,

1. 대정 8년 6월 18일부 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위익환(魏益煥) · 박용남(朴容南) · 김길훈(金吉勳) · 이운룡(李雲龍)의 각 시말서 가운데에 모두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불온문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제시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1. 통유(通諭)의 제1호가 있는 것 등을 종합 · 참작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판시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형명(刑名)을 변경한 후, 정해진 형량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안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 물건 중, 통유 제1호(증 제1호)는 범죄에 쓰려고 한 피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제출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郎)

최현 · 전영희	관리번호 : CJA0000412	쪽번호 : 358~363

판 결

평안북도 운산군 성면 연봉하리 재적, 경성부 안국동 34번지 거주, 중사학교 1학년생(종교 무), 최현 22세(10월 2일생)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동포리 재적, 당시 경성부 재동 106번지 거주, 보성법률상업학교[13] 1학년생(종교 무), 전영희 20세(8월 21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横田義太郎)가 입회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최현(崔鉉) · 전영희(全永禧)를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2호의 국치기념 경고문은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을 대단히 기다려 그 목적을 달성할 운동으로써

1. 피고 최현은 대정 8년(1919) 8월 24일 무렵에 위 주소지인 같은 피고의 집에서 예전부터 알던 주익(朱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국치기념경고」라는 제목으로 "8월 29일은 일본이 거칠고 사나운 기세로써 조선을 병합한 국치기념일이므로 조선 민족은 잠시라도 이를 망각하는 일이 없이 조선 민족 독립의 뜻을 관철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인쇄물 200여 매의 교부를 받고 이의 배부를 부탁받자,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언을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8월 28일에 50매를 피고 자신이 경성부 서

13) 보성전문학교의 전신.

대문정에서 종로통에 이르는 북측의 상점, 기타에 투입 배부하고, 또 100여 매를 위의 피고 전영희 외 2명에게 부탁하여 경성부 내에 배부하게 하고,

2. 피고 전영희는 같은 날 위의 피고 최현으로부터 위의 같은 피고 집에서 위의 「국치기념 경고」라는 제목의 인쇄물 50여 매의 반포를 부탁받자, 위 판시와 같이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문언이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중 40여 매를 같은 날 경성부 서대문정에서 종로통에 이르는 남측 상점에 투입 배부하고, 나머지 10여 매(증 제2호)는 또 이를 배부하려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피고들은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해당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각 자백 및 압수된 국치기념 경고문(증 제2호)이 있음에 비추어 증거가 충분하다.

법에 비춰보건대

판시 피고 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라 형명을 변경해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해서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징역 3월에 처할 것이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를 적용하여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2호의 국치기념 경고문은 범죄에 사용하려 한 피고 전영희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0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

조성은	관리번호 : CJA0000407	쪽번호 : 1136~1142

판 결

본적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니망지리, 주소 경성부 경운동 32번지, 무직, 조성은 23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 사기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전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는 경기의학전문학교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 유경익(劉敬翼)으로부터 올해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 선언을 함과 동시에 다수 학생이 경성부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 시위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해당 취지에 찬동하여 같은 날 만세를 절규하고 있는 학생의 무리를 쫓아 그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경성부 종로 및 남대문 · 서대문의 각 도로를 열을 지어 걸음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제2. 피고는 현재 경성 서대문 미결감옥에서 구금 중인 이덕화(李德和) 및 오례택(吳禮澤)과 공모하여 이름을 조선 독립 운동 자금이라 빙자하고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대정 8년 9월 20일 무렵에 이덕화와 함께 강원도 통천군 통천면 상방리(上芳里) 유재곤(劉載坤)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 유응준(劉應駿)에게 독립 운동 자금으로 능력껏 기부하라는 말로 속였으나 동인이 출금에 응하지 않았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의 자신은 경성의전의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3월 1일에는 손병희의 독립 선언과 동시에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독립 시위 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및 올해 9월 무렵에 알고 지내던 이덕화와 오례택의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셋이서 이야기하던 중에 오례택이 지금과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 운동 자금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하기에 자신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덕화 및 오례택이 여비는 걱정하지 말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강원도를 돌며 돈을 모집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하기에 자신은 금강산을 구경하는 점은 어느 정도 찬성하여 이덕화와 함께 원산으로 갔고, 그로부터 통천군 통천면 상방리 유재곤의 집에 갔는데 이덕화가 우리들은 조선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자금 조달을 위해 상해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자이므로 능력껏 기부하라고 쓰인 인쇄물을 유재곤에게 보이고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에게 거절당한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1. 검사의 피고 조성은(趙成殷) 조서에

올해 3월 1일 만세를 부르며 파고다 공원에서 출발하여 경성 남대문 · 태평통 등을 걸었다는 내용 및 오례택의 집에 놀러갔을 때 그에게서 독립 운동 자금이라는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편취할 것을 권유받아 끝내 이에 찬성하고, 이덕화와 함께 강원도로 출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같은 피고 신문조서에 자신의 동급생 유경익의 이야기에 의하면 3월 1일에 다수의 학생이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부른다고 하여 그날 오후 2시 무렵에 같은 공원 앞으로 갔더니 과연 학생이 만세를 부르고 있기에 그 무리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종로 · 남대문 · 서대문의 각 거리를 걸었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유응준 신문조서에

올해 9월 중순 무렵 증인 집에 두 사람의 30세 미만의 조선인이 와서 증인에게 우리들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자인데 이는 적지 않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기부를 부탁한다고 말하기에 증인이 거절하였는데, 그러면 여비 정도를 달라고 말하기에 2원을 준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제1의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 · 제10조를 적용하여 신 · 구법의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보안법』에 따라 그 정해진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제2의 행위는『형법』제246조 · 제250조에 해당하고, 위 제1 · 제

2의 죄는 병합죄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따라 처단한다.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02조에 의해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화종(李和鍾)

김태호 외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023~1031

대정 8년 공(公) 제95호

판 결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등리, 농업, 김태호 40세

충청남도 논산군 벌곡면 조룡리, 농업, 이백순 35세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지지리, 농업, 김종석 46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비전리, 농업, 황우열 56세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농업, 박성요 29세

충청남도 보령군 주보면 주교리, 농업, 최규석 62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면 왕포리, 농업, 조원상 61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비전리, 농업, 황우경 45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농업, 황금채 40세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지지리, 농업, 문재동 52세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농업, 박용화 39세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농업, 최용철 35세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본적지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 몽산리, 농업, 정판동 26세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현북리, 농업 겸 주류판매업, 김덕빈 37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김태호(金泰昊) · 김종석(金鍾錫) · 황우열(黃宇烈) · 박성요(朴性堯) · 황우경(黃宇京)

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이백순(李伯純)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최규석(崔奎錫) · 조원상(趙元祥) · 문재동(文在東) · 박용화(朴容和)를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 최용철(崔容澈)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정판동(鄭判同) · 황금채(黃金彩) · 김덕빈(金德彬)을 각 태 60에 처한다.

압류[差押]한 선언서는 몰수한다.

이 유

피고 김태호 · 이백순은 대정 8년(1919) 3월 2일 밤 6시 무렵 충청남도 논산군 욱정의 천도교 논산교구실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 천도교 교구원 민영순(閔泳淳)으로부터 손병희 등이 선언한 글의 제목으로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는 뜻을 기재한 문서를 부여교구에 배포 및 각 소에 살포할 것을 부탁하자 손병희 등의 행동에 찬성하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고 선언서 약 40매를 수취하여 피고 김태호는 그 중 한 꾸러미를 휴대하고 곧 출발하여 그날 밤 9시 무렵 부여군 부여면 천도교 교구실에 도착하여 마침 거기 있던 김종석 · 황우열 · 박성요 · 이범인(李範仁) · 최규석 외 1명에게 "조선독립 선언서로 손병희의 발신이니 지급 비밀로 각 소에 배포 · 살포하라"고 하고 그 한 꾸러미의 선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이백순은 그날 밤 한 밤중을 기다려 3일 오전 2시 무렵 앞에 말한 한 꾸러미의 선언서를 휴대하고 논산군 논산읍내 기타 각소 노상에다 전부 이를 살포하였고,

피고 김종석 · 황우열 외 1명도 함께 같은 해 3월 2일 밤 9시 무렵 앞의 항목에서 밝힌 것과 같이 김태호로부터 손병희가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 · 살포할 것을 부탁하자 손병희 등의 행동에 찬성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김태호로부터 선언서 한 꾸러미를 수취한 당시 같은 교구실에 있던 박성요 · 최규석 등과 함께 그날 밤 바로 배포 및 살포를 비밀리에 결행할 것을 결의하여, 그 등은 분배하여 교부하고 각 소에 배포 및 살포하였고,

피고 황우열은 그 중 5매의 선언서를 휴대하고 다음 날 3일 오전 2시 무렵 부여군 부여면 왕포리 손익희(孫益熙)의 집에 도착하여 조원상을 초대한 다음 손익희 · 조원상에게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발신한 선언서임으로 지급 비밀리에 배포 및 살포할 것을 말하고 이를 교부하고,

피고 박성요는 위에 게재한 협의에 의하여 김종석 등으로부터 그 선언서 5매를 수취한 즉시 출발하여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부근 도로에 살포하고, 나머지 수매는 같은 군 임천면 비정리의 박노휘(朴魯輝)에게 배포하고 계속하고,

피고 황우경 · 박성요 · 황금채 · 문재동 · 박용화 · 최용철 · 정판동은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함께 하기를 희망하여 같은 해 3월 6일 오전 7시 무렵 부여군 임천읍내에 이르러 피고 박성요는 같은 곳 수개 소에서 앞의 선언서를 첨부하였고, 피고 황우경은 같은 곳 시장 기타 수개 소에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하기 위하여 일동 집단을 만들었으며 같은 곳의 면사무소 · 공립보통학교 등에 이르러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였고,

피고 최규석은 앞의 협의에 의하여 김종석으로부터 같은 선언서 10매를 수취하고 그날 밤 한밤중에 교구실을 출발하여 부여군 부여면 구교리에서 같은 군 은산면에 이르는 도로에 이를 살포하였다.

피고 조원상은 같은 해 3월 3일 오전 2시 무렵 앞에서와 같이 황우열로부터 조선 독립 운동의 취지를 듣고 이에 찬동하여 그로부터 그 선언서 5매를 수취하고 곧 바로 출발하여 그중 2매를 부여면 중정리 · 염항리 도로에 뿌리고 3매는 같은 5시경 김덕빈 집에 가지고 가서 그에게 교부하고,

피고 김덕빈은 조원상 등으로부터 조선 독립 운동의 취지를 듣고 위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조원상 등으로부터 동 선언서 3매를 수취하자 곧 바로 자택을 출발하여 그 중 2매를 부여군 부여면 염창리 노상에 살포하였고, 1매를 같은 군 초촌면 신암리의 강면기(姜勉基)에게 교부함에 따라 모두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법률에 비춰보니 각 피고의 소행은『조선형사령』제42조,『보안법』제7조에 해당하고 피고 박성요에 대해서는『형법』제55조를 적용하고 모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고, 그중 피고 정판동 · 황금채 · 김덕빈을 징역 2월에 처해야 하는데 태형으로 바꿀 정상 참작이 있음을 인정하여『조선태형령』제1조 · 제4조에 따르고, 압수한 선언서는 범죄용에 관계되고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형법』제19조에 의해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이수욱 외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081~1088

대정 8년 공(公) 제96호

판 결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이수욱 30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추경춘 31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추득춘 25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윤자훈 26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윤자벽 36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윤상원 25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윤상억 31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김재주 26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윤상은 28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정상복 21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정원필 45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이장희 33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이광희 25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이규영 27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이수양 31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윤자명 52세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농업, 이상건 5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수욱(李秀郁)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추경춘(秋敬春)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 추득천(秋得天)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윤자훈(尹滋勳)·윤자벽(尹滋璧)·윤상원(尹相元)·윤상억(尹相億)·김재주(金在周)·정원필(鄭元弼)·이장희(李章熙)·이광희(李光熙)·이수양(李秀陽)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윤상은(尹相殷)·정상복(鄭相福)·이규영(李奎永)·윤자명(尹滋明)·이상건(李相健)을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품은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이수욱은 대정 8년(1919) 2월 28일 국장을 보기 위하여 경성에 도착하여 다음 달 3월 6일까지 머무는 동안 같은 지역에서 한국 독립 운동을 위한 폭동이 일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듣고 귀향하여 바로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추경춘을 방문하여 이에 찬동을 얻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여 이를 결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7일 밤에 같은 마을 박성교의 집에 이르러 피고 추득천·윤자훈·윤자벽·윤상원·윤상억·김재주와 회합하고 위의 취지를 알리고 같은 달 13일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협정하였다. 다시 같은 달 8일 밤에 같은 곳 김병옥(金炳玉)의 집에 이르러 피고 정원필·이장희·이광희 등과 회합하여 전과 같이 협의한 후 피고 이수욱은 각 피고와 함께 시장 군중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택에서 태극기 약 150본을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같은 달 13일 및 오전 9시 무렵 같은 시장 통로인 갈정리 언덕에서 같은 시장으로 가는 사람에게 조선 독립 운동을 할 것을 선동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 선동할 것을 위촉하는 등 휴대한 국기 여러 개를 교부하였고 입은 옷에 감추어 시장에 도착해 내가 독립에 관하여 연설을 행할시 일제히 국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크게 부르며 읍내를 돌아다닐 것을 제의하여 같은 날 오후에 시장에 도착하여 시장에 온 군중에 대하여 조선 독립에 관한 연설을 행하고 한국 독립 만세를 주창하기로 먼저 협정에 기하여 그 장소에 모인 피고 추경춘·추득천·윤자훈·

윤자벽 · 윤상원 · 윤상억 · 김재주 · 정원필 · 이장희와 시장에 온 피고 이수양 · 윤상은 · 정상복 · 이규영 · 이상건은 피고 이수욱으로부터 수취하고 또한 피고 윤자명은 피고 윤자벽으로부터 수취하여 각 입은 옷 속에 은닉하여 둔 동 국기를 꺼내어 높이 흔들며 계속하여 군중과 화답하며 군중과 함께 만세를 크게 불렀다. 피고 이수욱은 향도자(向導者)가 되어 그 무리는 이를 이끌고 만세를 절규하기를 계속하면서 같은 읍내 각 곳을 순행함으로서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 이수욱의 본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 중 같은 피고의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같은 취지의 진술,

피고 추경춘 · 추득천 · 윤자훈 · 윤자벽 · 윤상원 · 윤상억 · 김재주 · 윤상은 · 정상복 · 이장희 · 이광희 · 이규영 · 이수양 · 윤자명 · 이상건의 본 법정에서의 자백,

피고 정원필에 대한 헌병분견소에서의 신문조서에서 같은 피고가 판시와 같은 취지의 범행이 있었다는 뜻의 진술 기재,

상황 보고서의 판시에 피고 등의 불온한 행동 속에 헌병은 해산을 명했는데 피고 추득천은 헌병의 배지를 잡고 반항했다는 내용의 기사,

피고 이수양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3월 10일 피고 수욱(秀郁)으로부터 경성에서 만세를 부르는 이유를 들었는데 다수가 만세를 부르면 끝내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후에도 끊임없이 각 곳에서 만세를 부를 예정이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

이상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각 피고의 소행은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던 중 피고 윤상은 · 정상복 · 이규영 · 윤자명 · 이상건을 징역 3월에 처해야 하는데 태형으로 바꿀 정상 참작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를 적용하고, 압수품은 피고의 소유로써 범죄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해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9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이완규(異完圭)[14]

14) 李完圭의 오기로 본다.(『국역 고등법원판결록 7(형사편)』, 150쪽)

박장래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038~1041

대정 8년 공(公) 제119호

판 결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거산리, 농업, 박장래 21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박장래(朴璋來)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품은 각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2월 말 무렵에 국장(國葬)을 보기 위하여 경성에 와서 머무르던 중에 목격한 조선 독립 운동의 폭거(暴擧)를 찬동하여 이를 각 지방에 전파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월 10일 공주군 공주면 대화정 영명학교[15] 조수 김수철(金洙喆)의 집을 방문하여 당시 이 집에 있던 같은 학교 학생 안기상(安期商), 전에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신의득(申義得) 두 사람에게 "경성(京城), 기타 각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주가 되어 조선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주에서는 농업학교, 보통학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독립 운동을 하지 않는가? 경성에서는 여학생까지도 운동에 종사하는데 공주의 남자는 기개가 없다"고 격려 · 선동하였다. 또한 이 노래를 유행시키려고 조선의 독립을 찬양하는 문구를 나열한 독립가(獨立歌)를 가르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15) 공주 영명고등학교의 전신.

위 사실은,

신의득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자신 및 안기상이 판시와 같은 피고에게 독립가를 배워 이를 지방에서도 유행시키려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피고의 본 법정에서 압류[差押] 1호는 자신이 써서 안기상에게 교부한 독립가인데, 판시와 같이 경성에 머무르던 중에 조선 독립 운동이 있음을 목격하고, 3월 10일 공주에 가서 김수철의 집에서 안기상 · 신의득에게 우연히 독립가를 가르쳐 보냈다는 내용의 진술,

압류[差押] 1호의 「조선독립가」라는 제목의 조선 독립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구의 기사,

이상을 대조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한다. 압수품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처분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엄창섭 외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060~1072

대정 8년 공(公) 제103호

판 결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사립창영학교 교사, 엄창섭 20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고상준 20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추병갑 20세

전라북도 익산군 낭산면 호암리, 잡화상, 강세형 21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중정, 자전거상, 윤동만 22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염정, 곡물상, 정기섭 22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서삼종 24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김종갑 24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농업, 추성배 19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황금정, 농업, 한규섭 22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황금정, 재봉업, 박금봉 25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 해산물상, 석광열 22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중정, 재봉업, 곽성진 21세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상제리, 농업, 엄칠중 22세

위 피고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엄창섭(嚴昌燮)을 징역 2년에, 피고 강세형(姜世馨)·피고 고상준(高相俊)·피고 추병갑(秋炳甲)·피고 윤동만(尹東萬)·피고 정기섭(鄭沂燮)을 각 징역 1년에, 피고 서삼종(徐

三鍾) · 피고 김종갑(金鍾甲) · 피고 추성배(秋聖培) · 피고 한규섭(韓圭燮) · 피고 석광렬(石光烈)을 각 징역 6월에, 피고 박금봉(朴今奉) · 피고 곽성진(郭性鎭) · 피고 엄칠중(嚴七仲)을 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엄창섭은 대정 8년 3월 5일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대붕리(大鵬里)에서 군산(群山) 영명학교[16] 학생 강금옥(姜今玉)으로부터 조선 독립 운동을 하라는 선동을 받고, 바로 이에 찬동하여 같은 달 6~7일 무렵에 위에 적힌 거주지(충청남도 부여군) 사립 창영학교 내에서 피고 고상준 · 피고 추병갑에게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자고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피고들과 함께 같은 달 10일은 논산군 강경(江景) 장날이므로 그날 그곳에서 결행하고, 이를 결행하기 위하여 구한국 국기를 작성하여 시장에 온 군중 및 강경면에 살고 있는 청년 등 다수를 선동하여 함께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엄창섭은 같은 달 8일 무렵 강경(江景)으로 가서 위 국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선 백지 60매 · 염분(染粉) 30전 어치를 사고, 피고들은 창영학교에 집합하여 국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에 피고 엄창섭은 같은 달 9일에 피고 김종갑 및 피고 추성배, 피고 백칠룡을 위의 학교로 불러 그들에게 위 독립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고, 또한 국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김종갑 및 피고 추성배는 바로 이에 찬동하고 국기를 만드는 일을 보조하여 서로 함께 같은 달 10일 아침까지 국기 20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 추병갑은 피고 서삼종에게 이 학교 부근에서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자는 내용의 선동을 하고, 피고 엄창섭은 해당 국기를 강경면 옥녀봉까지 운반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 서삼종은 바로 이를 승낙하여 가마니에 넣어 둔 해당 국기를 위의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피고들은 서로 전후로 강경으로 갔다. 피고 엄창섭은 강경면에서 피고 박금봉 · 피고 엄칠중 · 피고 강석희 및 조행일(趙行一)에게, 피고 강세형은 김찬형(金燦亨) 및 피고 윤동만 · 피고 정기섭 · 피고 곽성진에게, 피고 윤동만은 박기홍(朴基弘) 및 피고 석광렬에게, 피고 정기섭은 황병현(黃炳弦) 및 피고 한규섭에게, 피고 추병갑

16) 군산 제일고등학교의 전신.

은 피고 서삼종에게 각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여 그들의 찬동을 얻었다. 각 피고는 그날 오후 3시에 위의 옥녀봉에 집합하여 그곳에서 피고 서삼종이 운반해 온 위의 국기를 꺼내어 조선 독립 만세를 연호하며 위 옥녀봉을 내려와 부근의 군중에게 해당 국기를 배포하고, 강경면 읫 시장으로 가서 군중을 선동하며 무리를 만들어 같은 면내 각 곳으로 행진함으로써 정치상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사실은

피고 엄창섭이 본 법정에서 한 자신은 대정 8년 3월 5일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대붕리로 갔는데, 군산 영명학교 학생 강금옥이 자신에게 지금은 조선의 독립 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를 때이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므로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자신은 바로 이에 찬성하였고, 창영학교로 돌아와서 피고 고상준 · 추병갑에게 위 강금옥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하자 그들도 이에 찬동하였다. 이에 오는 10일은 강경 장날이므로 시장에 온 군중을 선동하여 독립 만세를 따라 부르기로 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구한국 국기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은 같은 달 8일 무렵에 강경으로 가서 조선 백지 60장 및 염분(染粉) 30전 어치를 사서 그날 밤부터 자신들 3명은 창영학교 내에서 합계 200개를 만들었다. 그 국기는 령(領) 제1 · 2호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다수의 국기를 만든 것은 군중에게 이것을 배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달 10일에 자신들은 위 학교에 집합하여 출발 준비 중에 그 부근에 있는 서삼종에게 위 국기 200개가 든 가마니를 옥녀봉까지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는 이를 그곳까지 운반하였다. 자신은 같은 달 10일에 피고 박금봉 · 엄칠중에게 그날 오후 3시 무렵 옥녀봉에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선동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날 오후 3시 옥녀봉에 집합하여 위의 국기를 꺼내서 각자에게 분배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봉우리를 내려와 시장을 향해 행진하여 다수의 집단을 만들고 국기를 각자 군중에게 살포하였다. 자신은 군중에게 제2호 국기를 펼치고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하여 만세를 따라 부르라는 연설을 할 때 체포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피고 강석희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다카노(高野逢一)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10일에 엄창섭이 자신의 집에 와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르자고 말하기에 자신도 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

피고 김종갑에 대한 위와 같은 순사의 신문조서에, 대정 8년 3월 9일 밤에 엄창섭이 자신

을 불렀기에 학교로 갔는데, 그는 자신에게 내일 강경 시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 구한국 국기를 만들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하기에 자신들은 한국 국기 200개를 만들었고, 같은 달 10일 강경으로 갔더니 엄창섭이 만세를 부르고 있기에 자신도 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

피고 추성배에 대한 위와 같은 순사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9일 밤에 엄창섭이 자신을 부르기에 창영학교에 갔는데, 그는 자신에게 다음날 10일에 강경 장날에 만세를 부를 것이니 대한국 국기를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이를 승낙하여 도와주기 위해 국기를 만들었고, 10일 강경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백칠룡에 대한 위와 같은 순사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9일에 엄창섭이 자신을 부르러 왔기에 창영학교로 갔는데, 그는 조선 독립 만세를 위해 필요한 국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기에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강세형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사카다(坂田近藏)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자신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김찬형(金燦亨) 및 윤동만에게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정기섭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가네고(金子奉吉)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10일에 강완봉(姜完奉) 집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말을 듣고 자신은 한규섭 및 황병현에게 동일한 권유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곽성진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가네고(金子奉吉)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10일에 자신은 강완봉에게서 독립 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권유를 받고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윤동만에 대한 위와 같은 순사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자신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박기홍의 집에 가서 같은 사람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권유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조행일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히구치(樋口淸吉)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자신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강용봉의 집에서 엄창섭으로부터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권유를 받고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석광열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가네고(金子奉吉)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대정 8년 3월 10일에 윤동만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에게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빨리 집합장으로 집합하라고 하기에 집합 장소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서삼종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다카노(高野逢一)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 자신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창영학교 앞을 통과할 때 추병갑은 자신에게 오늘은 강경 장날이므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너도 참가하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가마니에 든 국기를 휴대하고 강경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피고 고상준, 피고 추병갑, 피고 한규섭, 피고 박금봉, 피고 엄칠중은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3월 10일의 강경 장날에 한국 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각 진술을 하였고,

령(領) 제1, 2호 물건이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또한 피고 박금봉 · 곽성진 · 엄칠중에 대해서는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를 적용하여 각 피고들을 각 주문과 같이 처단한다. 압수 물건은 『형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

송기면 · 유성렬 · 이근호 · 임학규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135~1139

대정 8년 공(公) 제104호

판 결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312번지, 농업, 송기면 25세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유성렬 61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구동리 23번지, 한문교사, 이근호 31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236번지, 농업, 임학규 2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송기면(宋箕勉)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 유성렬(劉性烈) · 이근호(李根浩) · 임학규(林學圭)를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한 깃발은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송기면은 예수교도로서, 일찍부터 우리의 시정(施政)에 불만을 가져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 각 지방에서 조선의 독립 운동이 빈발함을 듣고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대정 8년 3월 중순 무렵에 같은 교도인 피고 유성렬 · 이근호 · 임학규를 방문하여 그 계획을 말하고 찬동을 구하고, 또한 같은 달 29일에 서천군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모인 군중을 선동하여 독립 운동을 할 것을 상의하였다. 이에 피고 유성렬 · 이근호 · 임학규는 이에 찬성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 송기면은 자택에서 구한국 국기 200개를 만들어 같은 달 29일에 이를 가마니에 넣어

숨겨서 휴대하고 같은 시장으로 갔고, 다른 피고 3명도 서로 전후로 그곳에 가서 그날 오전 11시 무렵 각 피고는 서로 만나 앞부분의 국기를 시장에 온 군중에게 분배하였다. 피고 송기면은 선두에 서서 이 깃발을 흔들며 한국 독립 만세를 주창(主唱)하고, 다른 각 피고도 같은 깃발을 흔들며 이에 화답하고, 군중 약 2천 명과 함께 만세를 절규하며 이 시장 각 곳을 행진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각 피고는 바로 경찰관에게 끌려갔는데, 군중은 이들을 빼내고자 이 시장 경찰관출장소로 몰려가서 벽, 천장, 미닫이 문, 의자 등을 파괴하고, 또한 돌을 던지는 폭동을 있었던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 한 자백,

검증조서에 판시의 날, 판시의 장소에서 군중이 독립 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이를 제지하여 해산시켰으나, 응하지 않고 그곳 경찰관출장소에 난입하여 판시의 기구를 파괴하고, 또한 돌을 던지기에 권총을 발사하게 되어 2명의 총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이상을 대조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조선형사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여 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내에서 처단한다. 압수품은 피고의 소유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이계성 · 김관룡 · 김연택 · 유세근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154~1158

대정 8년 공(公) 제120호

판 결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기지리, 해미저축조합서기, 이계성 19세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해미공립보통학교 학생, 김관룡 20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수당리, 무직, 김연택 20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 무직, 유세근 20세

위 피고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협박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계성(李啓聖), 피고 김관룡(金寬龍)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 김연택(金然澤), 피고 유세근(柳世根)을 각 태형 90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이계성은 대정 8년 3월 24일에 해미보통학교[17]의 같은 해 졸업생과 재학생의 고별식이 있음을 기회로 하여, 같은 학생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 시위운동을 위해 만세를 부르고자 그 날 피고 김관룡의 집에 가서 그에게 다른 학교에서는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만 이를 부르지 않음이 매우 유감스러우니 오늘밤 이를 부르고, 이 학교 학생만으로는 소수이므로 전 졸업생 2~3명 및 예수교도도 이에 참가하도록 설득하자고 하여 그의 승낙을 얻고, 이어서 피고 이세근의 집에 가서 그와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17) 해미초등학교의 전신.

위와 동일하게 교사(敎唆)하고, 또한 예수교도 김병선(金炳善)의 집에 가서 그에게도 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정치상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김관룡, 피고 김연택, 피고 유세근은 그 권유에 응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관룡은 위 고별식 회장(會場)인 박선양(朴宣陽)의 집에서 집합한 학생들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야 하고, 만약 부르지 않으면 구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그날 밤 11시 무렵 피고들은 수십 명이 한 무리가 되어 해미면사무소 앞 및 같은 읍내 우시장에서 피고 김관룡의 주창(主唱) 하에 대한국 독립 만세를 불러 정치상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 이계성, 피고 김연택, 피고 유세근이 본 법정에서 한 각각의 판시 범죄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한 것과

피고 이봉이(李鳳伊)에 대한 조선총독부 순사 고노(河野彌平)의 신문조서에 같은 피고의 진술로서, 대정 8년 3월 24일의 졸업생 고별식이 있어서 박선양의 집에 갔는데, 피고 김관룡은 그곳에 온 자신들에게 오늘 밤에 연회를 마치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너희들도 함께 불러야 하고, 만약에 참가하지 않으면 구타할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자신들은 할 수 없이 이에 참가하여 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치안 방해 행위는『보안법』제7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김관룡의 협박 행위는『형법』제22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병합죄이므로『형법』제45조 · 제47조 · 제10조에 의하여 무거운『보안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刑)에 법정의 가중을 하여 각 그 형의 범위 내에서, 또한 김연택 · 유세근에 대하여는『조선태형령』제1조 · 제4조를 적용하여 각 피고를 각 주문과 같이 처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

민옥금 외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227~1232

대정 8년 공(公) 제130호

판 결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학생, 민옥금 17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학생, 한이순 18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학생, 황금순 18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광명학교 교사, 강기형 52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광부, 안시봉 19세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산평리, 직산금광회사 고용인, 김병렬 35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직산금광회사 고용인, 김채준 20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구두[洋靴] 수선업, 조쌍동 1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민옥금(閔玉錦), 피고 한이순(韓二順) · 황금순(黃錦順), 피고 강기형(康琦衡), 피고 안시봉(安時鳳)을 각 징역 1년에, 피고 김병렬(金秉烈), 피고 김채준(金採準), 피고 조쌍동(曺雙童)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민옥금 · 한이순 · 황금순 등은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사립 광명학교 학생으로서 대정 8년(1919) 3월 10일 무렵 학교 내에서 같은 달 20일의 입장 장날을 기하여 같은 학교의 다수 학생 등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한 만세를 부르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피

고 등 3명은 학교 내에서 서로 공동으로 구한국 국기(령 제1호)를 작성하고 같은 달 17일 무렵에 같은 학교 학생 등에 대하여 앞에 보인 취지로 만세를 부르자 선동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무렵 피고 등 3명은 같은 학교 학생 약 80명을 인솔하여 양대리 시장에 이르러 국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피고 강기형은 같은 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와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 때 마침 피고 안시봉도 역시 전과 같은 모양으로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한 만세를 부르고자 원하여 구 한국 국기(령 제2호)를 흔들고 군중 약 70~80명과 함께 만세를 불렀고, 피고 민옥금 등의 단체와 합동하여 같은 장소로부터 만세를 계속 부르며 입장 시장에 도착하여 같은 곳에서 군중은 약 300명의 일원이 되어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으며, 피고 김병렬 · 김채준 · 조쌍동(曺雙童)은 위의 단체에 가입하여 만세를 부름으로서 각 정치상 불온(不穩)한 언동을 행하여 치안을 방해했다.

위 사실은 피고 민옥금 · 피고 한이순 · 피고 황금순 · 피고 안시봉 · 피고 김병렬 · 피고 김채준 · 피고 조쌍동이 본 법정에서 각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 판시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한 것과, 피고 강기형에 대한 헌병오장 다카하라(高原円次郎)의 신문조서에서 같은 피고의 진술로서 자신은 대정 8년 3월 20일에 양대리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같은 주민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고, 또 광명학교 학생들도 와서 만세를 불러서 자신도 이와 함께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재,

령 제1 · 2호 국기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각기 구법에서는『보안법』제7조에,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는데『형법』제6조에 의해 가벼운『보안법』죄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등을 각각 주문과 같이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본 건의 범죄에 사용하려고 제공된 것이니『형법』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하기로 하며,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

이명종 · 최응모 · 오인섭 · 성배호 · 서승태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300~1306

대정 8년 공(公) 제133호

판 결

충청남도 보령군 고소면 죽림리, 농업, 이명종 26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 잡화상, 최응모 31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옹암리, 신발 제조업, 오인섭 22세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 죽산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옹암리, 농업, 성배호 31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신진리, 농업, 서승태 66세

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명종(李鳴鍾)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최응모(崔應模) · 성배호(成培鎬)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오인섭(吳仁燮)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서승태(徐承台)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류품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 이명종은 대정 8년(1919) 3월 6일에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 박원식(朴源植)의 집에서 그의 아우인 박세화(朴世和)로부터 경성에서의 조선 독립 운동 상황을 들었으며 또한 조선 독립을 주창하는 취지를 기재한 선언서를 보고, 원식(源植)과 함께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협의하여 같은 달 8일에 위의 선언서를 빌려서 2장의 양지(洋紙)에 그 문구를 대서하고 광천면 광천시장 및 같은 면 옹암리 2개소에 첨부하자 같은 곳 순사가 탈취함으로 다시 협의

한 후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많은 선언서를 등사(謄寫)하여 각 호(戶)에 반포하고 광천 장날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여 시위 운동을 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 최응모 · 오인섭 · 성배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알리고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함으로 같은 피고 등은 이에 승낙하고 같은 달 16일에 박원식은 앞에 보인 선언서를 피고 서승태에게 보이고 위의 결정을 상세히 고하고 등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문장을 간략히 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서승태는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8일 자택에서 박원식과 피고 오인섭에게 선언서 문구의 수정 보완[訂補] · 첨삭[加除]할 곳을 불러주어 박원식은 이를 필기하였고, 같은 날에 피고 오인섭의 집에서 박원식과 아울러 피고 이학종 · 최응모 · 성배호 등과 서로 만나서 각기 인쇄의 임무를 맡아 각 복사지를 써 조선 독립의 주창을 선언하는 요지를 박원식이 앞에 적은 필기의 원고에 의해 약 50매를 등사하였다. 피고 오인섭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집을 빌려줘 이를 방조하였으며, 그 반포를 담당한 피고 이명종 · 성배호 등은 같은 날 밤에 이를 광천리 · 옹암리 각 집에 반포하였으며, 피고 (서)승태를 제외한 다른 각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각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판시 중에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시위 운동을 했다는 점을 제외하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각 피고의 경찰관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각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기재가 있고, 압류 11호의 선언서에 판시와 같이 조선 독립을 주창한 내용의 기사가 있음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명종 · 응모 · 배호 · 인섭의 치안 방해 행위는 구법에서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형법』제10조에 의해 가벼운 전자의 법률에 의해 피고 서승태의 선언서 저술 행위는 융희 3년(1909)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1조 제1항 1호, 같은 형사령 제42조에, 피고 명종 · 응모 · 배호의 선언서 인쇄 행위는 같은 출판법 제11조 제2항 · 제1항 제1호, 같은 령 제42조에 해당하고, 피고 인섭이 방조한 점은 위 인쇄 행위에 비기는 법률 조항과 아울러『형법』제63조 · 제68조 3호에 의해 피고 승태를 제외한 각 피고는 하나의 행위로써 여러 죄명에 저촉되므로『형법』제54조

제1항 앞부분 · 제10조에 의해 해당 피고 명종 · 배호에 대해서는『형법』제55조를 적용하고, 피고 인섭에 대해서는 치안 방해형에, 다른 각 피고에 대해서는 출판법 위반형에 따라 각기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고, 압류품은『형사소송법』제202조에 의해 처분하기로 한다.

피고 서승태가 판시 행위에 의거해 치안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처단함에 있어, 그 치안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형사소송법』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이 정답이나 계속된 공소 사실에는 같은 피고에 대해서 출판법 위반죄에 연루된 하나의 죄만으로써 기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점으로써 특별히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박진화 외	관리번호 : CJA0000974	쪽번호 : 117~124

대정 8년 공(公) 제134 · 144 · 150호

판 결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인력거꾼, 박진화 35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정윤흥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양순 34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금복 23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강순화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손천일 38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윤배 36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승일상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이상균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학삼 26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상준 19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신흥남 19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이창균 22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강복개 18세

위 피고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병합 심리한 후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박진화(朴秦和)를 징역 3년에, 피고 정윤흥(鄭允興) · 피고 김양순(金良順) · 피고 김금복(金今福) · 피고 강순화(姜順和) · 피고 손천일(孫千日) · 피고 김원배(金元培) · 피고 승일

상(承一相) · 피고 이상균(李相均) · 피고 김학삼(金學三) · 피고 김상준(金學三) · 피고 신흥남(辛興男) · 피고 이창균(李昌均) · 피고 강복개(姜福介)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제1. 피고 박진화 · 정윤흥 · 김양순 · 김금복 · 강순화 · 손천일 · 김원배 · 승일상 · 이상균 · 김학삼 · 김상준 · 신흥남 · 이창균 · 강복개 등은 조선의 독립 시위 운동을 하기 위하여 대정 8년(1919) 4월 1일 오후 8시 무렵 마을사람 약 200명과 함께 위에 적은 거주지의 학성산 위에 집합하여 모닥불을 피우고 대한국 독립 만세를 부름으로서 안녕질서를 방해하였고,

제2. 피고 등은 위와 같이 대한국 독립 만세를 부른 후 이덕균(李悳均)은 피고 등과 군중에게 지금부터 신창면사무소 · 같은 주재소 · 같은 보통학교에 도착하여 건조물을 파괴하자고 선동함에 피고 등은 이를 찬성하므로, 피고 박진화는 이덕균과 함께 피고 등 및 다른 군중을 지휘하여 같은 면사무소에 도착했했다. 피고 정윤흥은 기세에 편승하여 같은 사무소에 돌을 던져 열린 문 한 장을 파괴하고서 같은 주재소에 몰려왔는데 피고 정윤흥은 또한 같은 곳에 돌을 던져 현관 등의 유리를 파괴하였다. 이어서 같은 면의 보통학교에 쇄도하여 피고 박진화가 앞서 같은 학교에 돌을 던지자 피고 등 각자는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기세를 도와 활발히 투석하고 유리창 272장 및 열린 문 4장을 파괴하여 소요가 극에 달하게 했다.

위의 사실 중

제1 사실로 피고 박진화 · 정윤흥 · 김양순 · 김금복 · 강순화 · 손천일 · 김원배 · 승일상 · 이상균 · 김학삼 · 김상준 · 신흥남 · 이창균 · 강복개가 본 법정에서 각기 그와 같은 요지의 자백을 함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제2 사실로

피고 정윤흥이 본 법정에서 자신은 대정 8년 4월 2일에 학성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그때 이덕균은 군중에게 지금부터 신창면사무소 · 같은 헌병 주재소 · 같은 보통학교에 도착해 건물 등을 파괴하자고 연설했는데 피고 등 및 군중은 이를 찬성하여 산에서 내려와 면사무소로 가서 자신은 돌을 던져 미닫이문 약간을 파괴하고, 그로부터 주재소로 와서 자신은 돌을 던져 현관등 1개를 파괴하고 이어서 일동은 보통학교로 가서 각자 돌을 던지고 판자문 2장, 유리창 수백 장을 파괴했을 때 군중의 선두가 된 사람은 이덕균

및 피고 박진화라는 요지의 진술,

피고 박진화가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4월 2일에 군중과 함께 신창면 보통학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은 맨 앞에서 돌을 던졌고 피고 등도 각자 이에 응하여 돌을 던졌던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

아산군 신창면장 박준섭(朴準燮)의 고소장에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10시 무렵 이번 소요에 참가한 자들이 면사무소에 돌을 던져 숙직실 미닫이문 3짝이 손해를 입었다는 요지의 기재,

신창헌병주재소 헌병 상등병 스가노(菅野庄二)의 피해 조서에서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9시 20분 무렵 박진화 등이 본 장소에 내습하여 돌을 던져 현관등 유리 4장을 파괴했다는 요지의 기재,

신창공립보통학교장 무나가타(宗方喬)의 고소장에서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10시 무렵 박진화 등이 본 학교에 내습하여 돌을 던져 교실 유리창 272장, 열림문 4장을 파괴했다는 요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제1 행위는 각 구법에서는『보안법』제7조에,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는데 위는『형법』제6조에 의해 가벼운『보안법』죄로 정한 형기에 따라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2 행위 중 소요 행위는 모두『형법』제106조 제2호에, 그 유리창 및 열린 문 파괴 행위는 각『형법』제260조 앞부분에, 피고 정윤흥이 현관등 유리를 파괴한 행위는『형법』제261조에 각 해당하는데 위는 모두 소요 행위와 하나의 행위로써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형법』제54조 제1항 앞부분,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보안법』위반의 행위와 병합죄에 관계되므로『형법』제45조 · 제47조 ·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소요죄로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여 각 피고를 주문과 같이 처단하기로 하고 이에 위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 등은 무나가타(宗方喬) 소유 가옥의 열린 문 2장을 파괴한 점에 대해서는 그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위는 본 죄의 일부로써 기소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특별히 주문에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정 8년 5월 2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히키치(引地寅治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

김사구 · 강영국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1280~1283

대정 8년 공(公) 제146호

판 결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농업, 김사구 42세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농업, 강영국 42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사구 · 영국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사구 · 영국은 공모하고 다수의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을 독립시키려는 시위운동을 하고자 하여 꽃놀이 모임을 개최한다고 사칭하고 대정 8년(1919) 4월 10일 보령군 청소면 성연리 신태중(申泰重) 집에서 초대에 응하고 참여한 임경진(林庚鎭) · 이병철(李秉喆) · 고광춘(高光春) · 박제건(朴齊乾) 등에게 "근래 다른 군에서는 각 다른 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시위 운동을 하는데 본 지방에서 이를 하는 자가 없음은 조상의 마음을 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에 우리가 주모자가 되어 같은 군 주포면 보령리 진두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이에 이를 가담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보령경찰서에서 각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에 각 피고가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기재가 있음과 같이 증인 박제곤 · 고광춘 · 임경진에 대한 신문조서에 피고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권유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기재가 있음에 대조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의 시행에 의해 그 이전의 형에 변경이 있고『형법』제6조에 따라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 · 구법에 문의(問擬) 대조함에 신법에서는 같은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야 한다. 구법에서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데 후자의 가벼움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해야 한다. 압수품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처분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박공삼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921~923

대정 8년 공(公) 제157호

판 결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농업, 박공삼 4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공삼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5일 조남희(趙南熙) 외 수십 명과 앞의 주소지 정자동(亭子洞)에서 구한국 국기 2개를 세우고 큰 종을 울리며 한국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고 의사를 계속하여 다음 날 6일 오전 10시 무렵 화성(化城)면사무소로 가서 같은 사무소 증축 공사 일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조선은 이미 독립했으므로 증축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공사를 계속 한다면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니 중지하라"고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

위 사실은 헌병분견소에서 한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피고가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기재,

박희석(朴喜錫)의 신문조서에서 화성면 면사무소 증축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피고로부터 판시와 같이 말을 듣고 끝내 공사를 중지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대공(大工) 3명, 인부 약 20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기재,

이상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을 살펴보니 피고의 행위는『형법』제55조,『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니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정인하	관리번호 : CJA0000973	쪽번호 : 1114~1116

대정 8년 공(公) 제188호

판 결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내죽리, 농업, 정인하 2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인하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인하는 조선을 독립시키려는 시위 운동의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4월 4일 밤 예산군 대흥면 대율리 동쪽 산 위에서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함께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또한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달 24일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강진호(姜鎭瑚) 집에 도착해서 그에게 이태만(李泰滿) 등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운동 결과 조선은 독립함에, 각 처에서 독립 만세를 부를 때에 이태왕(李太王) 전하의 훙거(薨去)는 병사(病死)가 아니고 일본인이 독살한 것이라는 등 불온한 언동을 하고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의 자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의해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함에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8조,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10조에 준하여 가벼운 구법의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이종하	관리번호 : CJA0000896	쪽번호 : 354~355

대정 8년 형(刑) 제280호

판 결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농업, 이종하 45세

위 사람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종하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2일 무렵 피고 자택에서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공명삼(孔明三)이라는 자의 사주에 응하여 같은 군 같은 면 성대리 주민 등에게 같은 날 같은 군 같은 면 석현리 시장에 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같은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같은 마을 주민 약 20명과 함께 위 석현 시장에 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 독립 운동을 시작함으로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마을 주민 약 20명과 함께 대한 독립 운동을 위해 석현 시장에 온 적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 및 피고의 시말서 중 공명삼 외 4명이 군중을 선동하는 데 참가하고 석현시장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다는 내용의 기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이종하 신문조서 중 "나는 우리 마을 사람만을 선동했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본 검사입회법정[131]에서 피고인 신문조서 중 공명삼의 권유에 의해 조선 독립이 됨을 희망하고 주민을 모아 석현시장으로 이끌고 갔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종합하여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131) 일제 때 지방재판소 검사국(檢事局)의 우두머리가 입회한 법정.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노(日野正雄)

이기영	관리번호 : CJA0000974	쪽번호 : 443-448

판 결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농업, 기영(基永) 또는 무경(武敬)이라 불린 이기영

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시부야(澁谷有孚)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 기록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는 대정 8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들어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같은 해 4월 3일 오후 4시 무렵부터 6시 무렵까지의 사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鶴山面) 서산리(鋤山里)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 운동의 방법으로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제2. 피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무렵 약 200명의 군중과 함께 같은 면사무소로 몰려갈 때 다른 여러 명과 함께 이들을 선동 · 지휘하여 그곳으로 몰려갔고, 무리에 솔선하여 스스로 그 기세를 더하였다. 또한 위 군중과 함께 그곳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심어져 있던 뽕나무 묘목 약 2만 8천 개를 뽑아 부근에 흩어버리고 그 나머지는 그곳 앞 도로 위로 가지고 나와 불태움으로써 그 기세를 북돋으며 소요를 극렬하게 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 한 제1 판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압수 기록 중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18]의 증인 김기홍(金基洪) 신문조서 중 자신은 판시의

18)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아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다룰 권한이 인정된 자.

날 오후 7시 무렵 학산면사무소 앞의 최경생(崔敬生)의 집에 있었는데, 아암리(鵝岩里) 방면에서부터 약 200명의 군중이 대한 독립 만세를 높이 외치면서 몰려왔고, 그 때 군중은 양봉식(梁鳳植) 등이 선동을 도와 함성을 지르며 위의 뽕나무 묘목을 부근에 흩뿌리게 하고 또한 이를 모아 정문 도로로 가지고 나와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같은 사람 및 피고 이기영(李基永) 등 다른 여러 명은 그 때 위 선동을 지휘하고, 또한 소요 중에 있는 군중에 솔선하여 폭행을 도운 자로서 이것은 각 마을 주민 등이 알고 있는 바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

위와 같은 증인 여규원(呂圭圓)의 신문조서 중 자신은 학산면장인데, 판시의 날 오후 7시 무렵 면서기 이철주(李喆周)와 함께 면사무소에 있을 때 3~4명의 사람이 서북 방면에서부터 만세를 부르며 통행하고 있었고, 약 30~40분 후 면 소사(少使)가 달려와 "지금 아암리 방면에서 다수의 사람이 만세 운동을 하며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급히 알려주었다. 이에 자신은 서기와 함께 후방 버드나무 아래 제방으로 피하였는데 그 때 군중은 사무소 건물 내로 침입하여 양봉주라는 자의 선동에 따라 만세를 부르면서 위의 뽕나무 묘목을 도로로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았고,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갔다. 그리고 피고 이기영은 양봉주 외 여러 명과 함께 군중 속에서 그들을 선동 · 지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위와 동일한 증인 장재흠(張哉欽) 신문조서 중 판시의 날 오후 7시 무렵 판시의 면사무소 앞 최경생 집에 가서 그 집의 문을 열고 군중의 행동을 보고 있었는데, 군중은 면사무소에 들어가 대한 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고 그 후 양봉주의 선동에 응하여 뽕나무 묘목을 뽑아버린 후에 다시 이를 도로로 가지고 나와 불태워버렸고, 그 때 피고 이기영이 같은 사람 및 다른 여러 명과 함께 군중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기록 중에 순사 우치다(內田豊三)가 작성한 검증조서 중 대정 8년 4월 3일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소요 사건이 있다는 급보를 접하고 바로 출장하여 검증하였더니 학산면사무소 출입구의 유리문짝 한 개가 분쇄되었고, 동쪽 측면 건물 내에 있던 뽕나무 묘목 2만 8천개는 전부 뽑혀 버렸고, 약 1천개는 같은 건물 내 및 바깥 도로의 밭, 문의 지붕 등에 흩어져 있었다. 그 나머지는 그곳 가로에 있는 도로에 불태워진 것으로 도로에는 불태운 흔적이 있고, 이에 면장 여규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들었더니 그날 밤 200여 명의 사람이 집합하여 군중이 면사무소로 몰려와 건물 내의 뽕나무 묘목을 뽑아 나와 불태워버린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판시 제1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면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 · 제6조에 따라 신 · 구 두 법의 형을 비교 · 대조하여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10조 · 제9조에 따라 대조하였더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의 『보안법』을 적용하여 정해진 바 형기 중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판시 제2 행위는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 두 개의 죄는 병합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 제47조 · 제10조에 무거운 제2의 죄의 형에 법정의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압수 기록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처분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8월 25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

구열조 · 윤정훈 · 이용기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290~293

대정 8년 형(刑) 제293호

판 결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175-4번지, 농업, 구열조 36세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168-6번지, 농업, 윤정훈 39세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산성리 33-2번지, 농업, 이용기 40세

위의 사람 등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열조 · 정훈 · 용기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 열조는 대정 8년(1919) 밤에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성산에서 같은 마을 사람 김성복(金聖福) 외 11명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앞에 적은 마을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정훈은 대정 8년 4월 8일 밤에 같은 군 같은 면 같은 리의 무명산(일명 갓빈데산)에서 같은 마을 사람 윤홍훈(尹洪勳) 외 8명에게 앞과 똑같은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앞에 적은 마을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피고 용기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밤에 같은 군 같은 면 같은 리의 서쪽 뒤 언덕 위에서 같은 마을 사람 약 20명에게 앞과 똑같은 불온한 언동을 제멋대로 하고 앞에 적은 마을 사람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피고 열조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주민 11명과 함께 성산으로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주장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구열조 제2회 신문조서 중 마을 사람 김수려(金秀麗) 외 11명에게 독립 만세를 성산에 가서 연호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독립 만세를 2시간 정도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본 검사입회법정[檢事廷]에서 한 피고인 구열조 신문조서 중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마을 사람 다수를 데리고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피고 정훈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마을 사람 8명과 함께 무명산에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주장과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윤정훈의 제2회 신문조서 중 마을 사람과 함께 갓빈데 산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본 검사입회법정에서 피고인 윤정훈 신문조서 중 조선 독립을 희망해 마을 사람을 권유하여 거주 마을 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피고 용기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거주 마을 서쪽 뒤 언덕 위에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주장과 본 검사입회법정에서의 피고인 이용기 신문조서 중 마을 사람 약 20명과 함께 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사,

이상 등을 종합하여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에 비춰보니 피고 3명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한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1항 앞부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니 『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의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기 처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조동숙(趙東肅)

원세덕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499~500

대정 8년 형(刑) 제324호

판 결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농업, 원세덕 27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세덕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류한 기록 1권은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17일에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같은 군 제천면 모산리에 사는 이범우(李範雨)와 만나고 또한 같은 시장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범우로부터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의 뜻이 있음을 들어 알고 이에 찬동하고 그렇다면 공모자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시장에 마침 있던 같은 면 하소리의 이기하(李起夏)에게 위 이범우의 계획을 알리고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야 한다고 선동함에 이기하는 바로 이범우와 회합하고 다른 여러 명과 함께 공모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 무렵부터 위 시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판시의 이범우와 이기하와의 만남 기회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진술 및 압수한 대정 8년 형 제286호 이범우 외 3명의『보안법』위반 피고 사건 기록 중 사법경찰관의 이범우에 대한 신문조서 중 앞 판시에 부합하는 동일한 취지의 기사, 같은 경찰관의 이기하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및 검사의 같은 사람에 대한 신문조서 중 앞 판시에 부합하는 동일 취지의 진술 기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위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 및『정치범처벌령』제1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에 의해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고 그 가벼운『보안법』의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압수한 형사 기록은『형사소송법』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유키(結城朝陽)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노상구(魯相龜)

임백규 외	관리번호 : CJA0000896	쪽번호 : 399~403

대정 8년 형(刑) 제297호

판 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임백규 31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김동식 38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농업, 김달년 27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정인식 36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박병철 20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이용학 24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민병철 20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박영록 24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농업, 박제성 18세

위의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백규 · 동식 · 달년을 징역 6월에, 피고 인식 · 박병철 · 이용학을 태 90 및 벌금 20냥에, 피고 민병철 · 박영록 · 박제성을 각 태 90에 처한다.

위 피고 인식 · 병철 · 용학은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각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제1. 피고 백규 · 동식 · 달년은 현재 도주 중인 임경순(任暻淳)의 선동에 응하여 대정 8년(1919) 4월 2일 밤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의 같은 면사무소에 군중 수백 명과 함께 내습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피고 백규 및 달년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창문을 파괴하였고, 피고 동식은 비치된 의자를 파괴하고 무리에 솔선하며 기세를 도와 군중에게 같은 건

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또한 기구 · 장부 등을 파기하여 소란을 더하도록 소요를 일으킨 자이다.

제2. 피고 인식 · 병철 · 용학은 같은 날 밤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목적으로 마을 뒷산에서 다른 수십 명과 함께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치안을 방해하고 이어서 앞에 적은 면사무소 습격에 따라가 소요를 일으킨 자이다.

제3. 피고 민병철 · 박영록 · 박제성은 앞과 같은 날 밤에 마을 뒷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다른 수십 명과 함께 크게 외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피고 백규 · 동식 · 달년이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치안을 방해한 점은 『보안법』 제7조 및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1항 앞부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여 그 가벼운 『보안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소요에 관한 점은 『형법』 제106조 2항에 해당하지만 한 개의 행위로써 2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에 따라 그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 인식 · 병철 · 용학이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치안을 방해한 점은 『보안법』 제7조 및 『정치범처벌령』 1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6조에 따라 그 가벼운 『보안법』에 의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소요에 관한 점은 『형법』 제106조 제3호에 해당하나 또한 병합죄이므로 『형법』 제45조 · 제48조를 적용하여 피고 등을 징역 3월 및 벌금 20냥에 처해야 한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헤아려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에 따라 태 90에 처하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법』 제18조에 의해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 민병철 · 박영록 · 박제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및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여 그 가벼운 『보안법』에 의해 징역 3월에 처해야 하나 그 정황을 헤아려 『조선태형령』 제1조 · 제4조에 의해 태 90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1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유키(結城朝陽)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노상구(魯相龜)

공재익 · 조기시 · 최덕용 · 이금봉	관리번호 : CJA0000974	쪽번호 : 74~82

대정 8년 공(公) 제152호

판 결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평계리, 농업, 공재익 42세

본적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평계리,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장찬리, 농업, 조기시 28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농업, 최덕용 21세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미동리, 농업, 이금봉 23세

위 소요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공재익(孔在翊) · 조기시(曺奇矢)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최덕용(崔德用) · 이금봉(李今奉)은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재익 · 기시 · 덕용 · 금봉은 대정 8년 3월 27일 오후 1시 무렵 육창주(陸昌柱) · 허상기(許相基)가 옥천군 이내면 이원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이곳에 모인 군중 약 300명을 선동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을 때 그 집단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고 같은 시장을 행진 순회하였고, 육창주 · 허상기 · 김용이(金龍伊)가 경계 임무를 맡아 헌병의 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장소 헌병주재소로 끌려가자 그 집단은 이를 따라서 같은 주재소에 쇄도하여 돌을 던지는 등 기타 폭행을 하자 같은 장소의 헌병이 발포하여 이에 맞서던 군중 속의 한 명이 탄환이 명중해서 즉사함으로 집단은 일시 그 장소에서 퇴각하였지만 같은 3시 무렵 죽은 자의 형이 되는 이일만(李一萬)이 동생의 사체를 같은 주재소로 데려와 항의를 하자 이

에 그 집단은 다시 같은 장소에 쇄도하고 피고 재익은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헌병에게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하게 항쟁하고, 피고 (조)기시도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큰 돌을 같은 장소 유치장에 던져 파괴해서 구금 중인 김용이를 탈취하고, 피고 덕용 · 금봉도 역시 타 사람이 솔선하여 같은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짐으로 각 그 집단의 기세를 도와 이에 군중이 기세를 타 돌을 던지고 또 곤봉 등을 흔들어 같은 장소 또는 헌병에게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실은 옥천헌병분대에서 한 피고 공재익에 대한 신문조서에 자신은 대정 8년 3월 27일 오후 1시 무렵 면사무소에 갔다가 그로부터 이원시장에 이르러 헌병주재소로 향하는 도중 죽은 자의 형으로부터 동생이 헌병에게 사살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개한 나머지 헌병소로 갔는데 같은 곳의 직원 앞에는 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육창주 등이 왜 사람을 사살했냐고 질타하고 있어서 자신도 앞에 나와 분대장에게 "왜 사람을 쳐서 죽이느냐, 헌병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는데 이(李) 감독보조원은 자신에게 "너는 구장이 아니니 그 장소에서 강하게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모양으로 일을 말하니 다른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어 폭행을 하려 하지 않느냐, 빨리 다른 폭행(가담)자를 데리고 집에 가라"고 말했는데 자신은 "이 죽은 자에 대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고 그 곳에 있었는데 오후 5시 반 무렵에 군중은 헌병을 향하여 나뭇조각 또는 돌을 던졌고, 또한 군중이 일시에 기세를 모아 만세를 부르고 목석(木石)을 던졌는데 그때 자신은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른 것뿐이고 폭행을 한 적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피고 조기시에 대한 제2회 같은 조서에 자신은 3월 27일 오후 무렵 이원시장에 도착하였는데 군중이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서 그 집단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고 시장을 행진하던 중 그 사이에 헌병이 군중 속에서 육창주 · 허상기를 헌병주재소에 연행해 가고, 자신 등은 그 뒤를 따라 같은 주재소에 가서 김용이가 난폭한 행위를 하여 유치장에 들어가고 다른 자는 헌병에게 그 부당함을 따지며 전면에 있었고 군중은 사무실을 향해 돌을 던져 헌병이 발포하여 이일만의 동생이 사살되었기 때문에 군중은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서 도망쳤지만 이일만은 동생의 사체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사격한 자는 나오라고 위협했는데 그 때 자신

은 다른 3명과 함께 유치장의 뒤쪽을 돌아 큰 돌로 같은 장소를 파괴하고 그 파괴한 곳에서 구금되어 있는 김용이를 탈환하고, 다른 군중은 심하게 난폭해져 헌병이 타고 있는 말을 구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피고 최덕용에 대한 같은 조서에 3월 27일에 나는 이원시장에 갔다가 그로부터 헌병대에 이르렀는데 김용이가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 군중이 분대장에게 풀어줄 것을 압박한 끝에 돌을 던지고 사무소를 파괴할 때 한 사람이 사살되자 그 때문에 군중은 일시적으로 물러났지만 또 전과 같이 모여 사체를 운반하고 하수(下手)자를 나오라고 위협하고, 우리 군중은 일시에 만세를 부르며 주재소 직원 등을 향해 돌을 던지고 또 곤봉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피고 이금봉에 대한 같은 조서에 3월 27일 이원시장에서 육창주 등이 구 한국기를 흔들며 선두에 서서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므로 자신도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행진하던 사이 육창수 등이 헌병에게 끌려가 자신 등도 이를 따라 헌병소에 모였는데 김용이(金龍伊)가 심하게 난폭해져 마침내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되자 다른 자들이 풀어주라고 압박하며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깰 때 자신도 함께 돌을 던졌지만 헌병이 발포하므로 도망가다가 한 명이 사살되자, 이윽고 죽은 자의 형이 동생의 사체를 운반해서 헌병에게 따지고 군중은 다시 같은 주재소에 모여 직원을 둘러쌌는데 그 때 자신도 함께 사무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만세를 불렀고, 어떤 난폭한 사람이 있어서 그 때문에 군중이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헌병에게 나뭇조각과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증인 이윤준(李允準)에 대한 같은 조서에 3월 27일 오후 3시 무렵 만세를 크게 외치고, 주모자 김용이가 폭행을 하여 유치장에 구속되자 피고 조기시가 유치장의 뒤쪽을 큰 돌로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피고 최덕용이 본 법정에서 한 판시 중 주재소에 쇄도한 군중이 약 300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

이상을 대조 ·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치안 방해 행위는『보안법』제7조,『조선형사령』제42조에 해당하고, 소요 행위는『형법』제106조 2호에 해당하며, 피고 조기시의 유치장 파괴 행위는『형법』제260조에, 구

금자를 탈취한 행위는 같은 제99조에 해당하는 바 모두 한 가지의 행위로 여러 가지의 죄명에 저촉됨으로 같은 제54조 제1항 앞부분 · 제10조에 따라 각기 무거운 소요의 죄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피고 재익 · 덕용 · 금봉이 피고 조기시와 함께 판시의 유치장을 파괴하고 김용이를 탈환한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본 공소는 같은 각 피고에 대한 판시 범죄와 한 가지의 행위로 여러 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얽혀 있는 하나의 죄로써 기소된 것이라 인정됨에 그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2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

변영봉 · 신석범 · 송태현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373~374

대정 8년 형(刑) 제309호

판 결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19], 농업, 일명 성서(聖西)인 변영봉 34세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농업, 일명 덕보(德甫)인 신석범 25세

충청북도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농업, 일명 응삼(應三)인 송태현 45세

위 사람 등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영봉(榮鳳) · 석범(錫範) · 태현(台鉉)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3명은 대정 8년 4월 1일 밤에 청주군 북일면 우산리 뒷산 정상에서 같은 마을 사람 수십 명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며 불온한 말로 앞에 적은 마을 사람을 선동하여 같은 산꼭대기에 횃불을 피우고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불러 치안을 방해하였다.

법령에 비춰보건대, 피고 3명의 행위는 모두『보안법』제7조 및 범죄 후 공포된 올해의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의 앞부분에 해당함으로『형법』제6조에 의해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여『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의 정해진 바 형기 내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해 각기 처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 현재의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조동숙(趙東肅)

은경옥 외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437~440

대정 8년 형(刑) 제283호

판 결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잡화상, 은경옥 26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이희갑 24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학생, 이강렴 18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화석리, 농업, 손승억 26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일명 탁영인 윤주영 23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윤무영 36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이강호 25세

충청북도 충주군 신니면 신청리, 농업, 김은배 28세

위의 사람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본 지청은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경옥(慶玉)을 징역 1년에, 피고 희갑(喜甲) · 강렴(康濂) · 승억(承億)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 주영(周榮) · 무영(務榮) · 강호(康滈) · 은배(殷培)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 8명은 조선 독립 운동의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3월 31일에 피고 희갑의 앞에 적은 주택에서 다음날인 4월 1일에 충주군 신니면 용원장날에 낭독하여 군중을 선동할 선언서와 아울러 태극기를 만들 것을 결의하고, 피고 경옥 · 희갑 · 강렴은 스스로 독립 운동 대표자로서 조선 독립 계획을 고취하는 불온한 문구의 선언서 7통을 복사하고, 피고 승억은 스스로

독립 운동 대표자로서 앞에 적은 선언서를 등사하였고, 피고 주영 · 무영 · 강호 · 은배는 피고 경옥 · 희갑 · 강렴과 함께 구 한국 국기인 태극기 9개를 만든 후 다음 날 4월 1일에 앞에 적은 용원시장에서 위 선언서를 대중에게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고 불온한 언론으로 말하여 군중을 선동해 조선 독립 운동을 개시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법령에 비춰보건대 피고 8명의 행위는 모두 『보안법』 제7조 및 범죄 후 공포한 올해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의 앞부분에 해당함으로 『형법』 제2조에 의해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니 『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의 정해진 바 형기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해 각기 처단하고, 압수 물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19조에 의해 몰수하기로 하며,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조동숙(趙東肅)

황만모	관리번호 : CJA0000897	쪽번호 : 387~388

대정 8년 형(刑) 제415호

판 결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농업, 일면 사중(士仲)인 황만모 27세

위의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만모(黃模)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2일에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의 목적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에서 같은 마을의 허금돌(許今乭) 외 4명에게 "같은 밤 같은 장연면사무소에 모여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불러야 한다"고 선동하여 함께 면사무소로 가서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자백 및 해당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 중 앞의 판시와 부합하는 동일한 취지의 기사로 보아 이를 인정한다.

위 피고의 행위는『보안법』제7조 및 범죄 후 공포된 올해 제령 제7호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형법』제6조에 의해 신 · 구법을 비교 · 대조하여『보안법』이 가벼우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가 앞의 기록에 같은 달 2일 밤에 군중과 함께 위 장연면사무소에 가서 돌을 던지고, 같은 곳을 파괴하는 소요를 일으켰다는 공소(公訴)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나, 앞의 적은『보안법』과 얽혀 있는 죄의 관계이므로『형법』제54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죄로써 처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6월 1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유키(結城朝陽)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노상구(魯相龜)

